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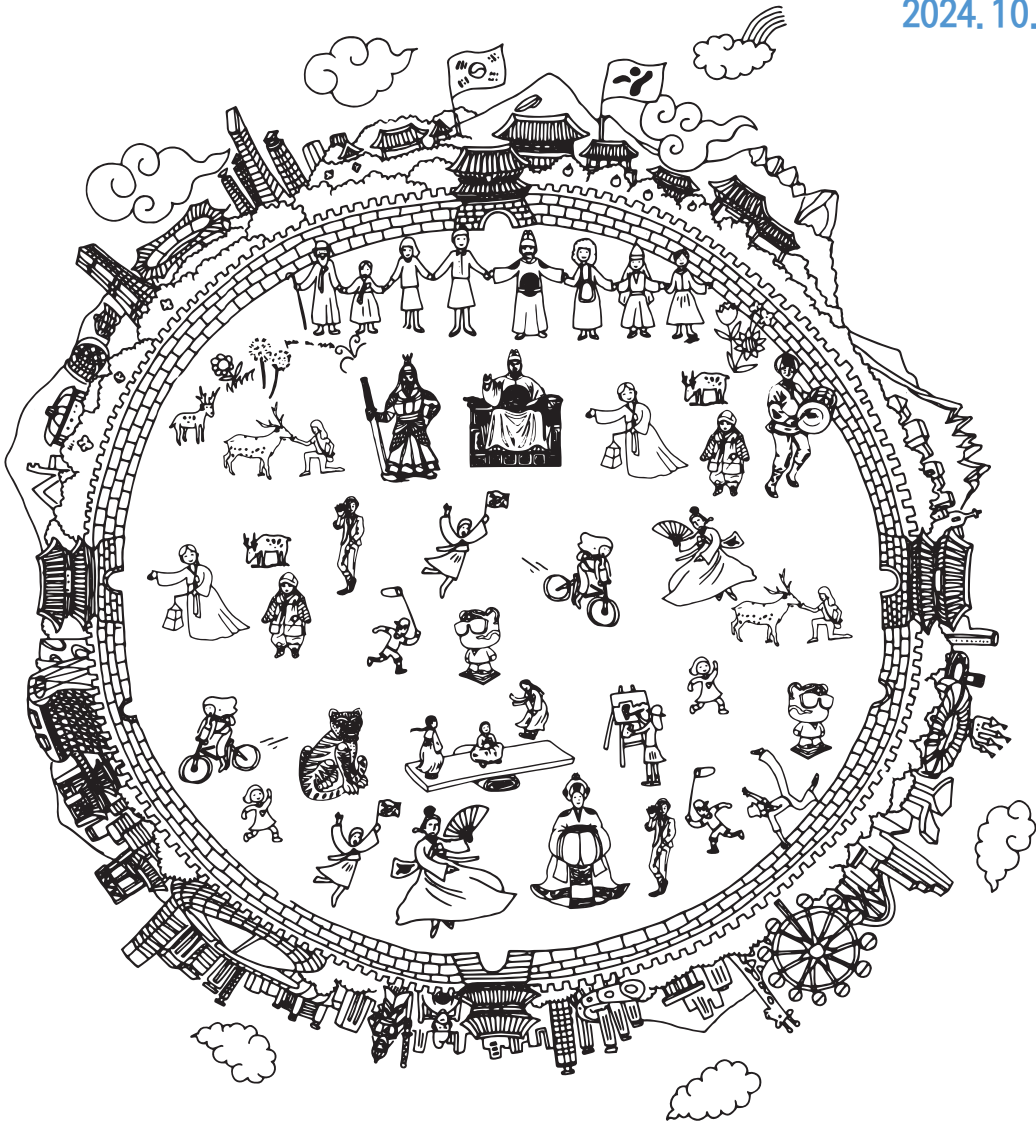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제4015호  
2024. 10. 16.(수)



## 목 차

### ◆ 공 고

|                                   |   |
|-----------------------------------|---|
| 제2024-282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 | 2 |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조례안<br>(19건) | 1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br>(인사과)       |
|              | 2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국<br>(세제과)       |
|              | 3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br>(기획담당관)   |
|              | 4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br>(조직담당관)   |
|              | 5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br>(조직담당관)   |
|              | 6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br>(법무담당관)   |
|              | 7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후환경본부<br>(친환경차량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8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후환경본부<br>(생활환경과)    |
|    | 9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보기획관<br>(콘텐츠담당관)    |
|    | 10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실<br>(복지정책과)       |
|    | 11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실<br>(안심소독과)       |
|    | 12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복지실<br>(장애인복지과)      |
|    | 13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보건의료정책과)   |
|    | 14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보건의료정책과)   |
|    | 15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감염병관리과)    |
|    | 16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기술정책관<br>(건설혁신담당관) |
|    | 17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실<br>(주택정책과)       |
|    | 18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실<br>(재정비촉진과)      |
|    | 19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청년기획관<br>(청년정책담당관)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동의안<br>(12건) | 1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국<br>(재산관리과)     |
|              | 2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행정국<br>(인력개발과)     |
|              | 3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평생교육과)   |
|              | 4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동의안      | 민생노동국<br>(공정경제과)   |
|              | 5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녹색에너지과) |
|              | 6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실<br>(양성평등담당관) |
|              | 7  |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실<br>(양성평등담당관) |
|              | 8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실<br>(양성평등담당관) |
|              | 9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실<br>(아동담당관)   |
|              | 10 |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실<br>(가족담당관)   |
|              | 11 |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br>(감염병관리과)  |
|              | 12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공간본부<br>(도시계획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의견<br>청취안<br>(4건) | 1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br>-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간본부<br>(시설계획과)   |
|                   | 2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br>-성균관대학교-         | 도시공간본부<br>(시설계획과)   |
|                   | 3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 도시공간본부<br>(도시재창조과)  |
|                   | 4  |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균형발전본부<br>(균형발전정책과)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별표 서식에 규정된 표창 양식과 실제 활용 중인 양식 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표창 양식에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의 내용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은 삭제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나.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22.~9. 11.) 결과: 의견없음
- (2) 산·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 임고은 (☎02-2133-5731)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로,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한다” 를 “한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직무에 특히 성실” 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 등과” 를 각각 “공무원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은 후 추천한다” 를 “미리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표창시 해당” 을 “표창 시 제13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의” 를 “상장을 수여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부서로 하여금” 을 “감사부서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장” 을 “공적심의회

위원장이” 로, “지명한” 을 “미리 지명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를 “(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기관장” 을 “소속기관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으로, “표창권자가” 를 “시 소속기관의 장 이” 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표 창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별지 제2호서식] 상장

제 호

상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제 호

감 사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br><u>시</u> -----<br>-----<br>-----.                                             |
| 제2조(적용범위) <u>시</u> 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 제2조( <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br>-----<br>----- <u>조례에서</u> -----<br><u>따른다</u> . |
|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br>1.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u>한한다</u> )<br>2. (생략) | 제4조(표창권자) -----<br>-----<br>-----.<br>1. -----<br>-----<br>-----<br>--- <u>한한다. 이하 같다</u> ---               |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br>1. <u>직무에 특히 성실하고</u>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br>-----<br>-----.<br>1. <u>직무를 성실히 수행</u> -----<br>-----<br>-----<br>-----             |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4. (생략)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  
-----  
-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장 수여대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 공무원등, -----  
-----
2. -----  
----- 공무원 등, -----  
-----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  
범위-----  
-----.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제12조(공적심의회)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적심의회는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시 공적심의회) ① 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

-----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미리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적심의회) ① -----  
표창시 제13조에 따른 -----  
----- 상장을 수여하는 -----.

② -----  
-----  
----- 감사부서에 -----  
-----.

제13조(시 공적심의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⑥ 공적심의회의 위원장이 -----  
----- 미리 지명한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 소속기관의 장-----  
-----  
-----  
-----.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  
-----  
-- 시 소속기관의 장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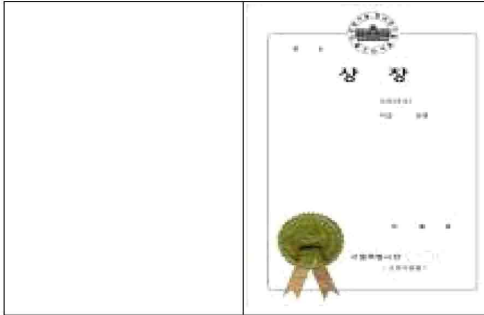
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p> <p>&lt;표 지&gt;</p>  <p>※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p> <p>&lt;내 지&gt;</p>  <p>※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br/>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p> <p>[별지 제2호서식] 상장</p> <p>&lt;표 지&gt;</p>  <p>※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p> | <p>[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p> <div> <p>제 호</p> <p>표 창 장</p> <p>성명</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 ○○○</p> </div> <p>[별지 제2호서식] 상장</p> |

<내 지>



※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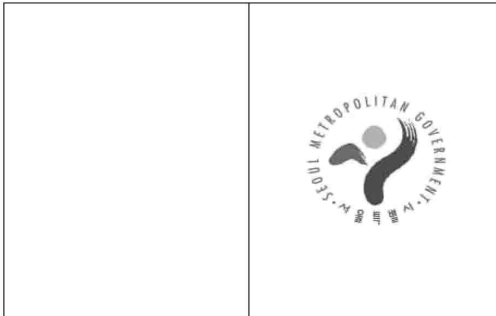
상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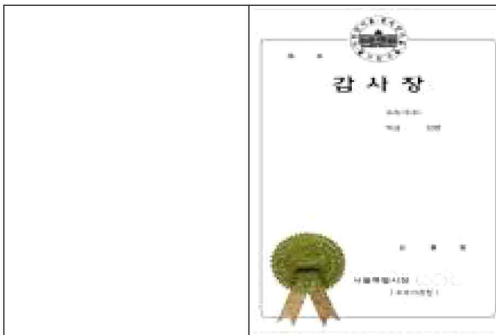
제 호

감 사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내 지>



※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별지 서식과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

###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 임고은(2133-5731)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 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 27. 12. 31.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16. ~ 2024. 9.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 02-2133-3355)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를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를 “과세대상의 동일

한 세목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으로,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llegible]





를」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 2027년 12월 31일

[illegible]

② (생략)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  
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  
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  
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  
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

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

---

---

----- 2027년 12월 31일 -----

-----

\_\_\_\_\_

---

\_\_\_\_\_.

② -----

-----

---

\_\_\_\_\_

---

-----

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략)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7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 2027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

-----.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

----- 2027년 12월 31일 ---

\_\_\_\_\_.

\_\_\_\_\_.

\_\_\_\_\_.

\_\_\_\_\_.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  
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_\_\_\_\_.

\_\_\_\_\_.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②



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2. (생 략)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

-----  
-----  
----- 2027년 12월 31

일-----, -----

-----  
-----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2027년 12

월 31일-----,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의 감면 적용기간에 대한 연장으로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5)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 강조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
- 다.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1항)
- 라.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3항제4호 및 제5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22. ~ 9. 1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 2133-664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를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을 “기본계획 및”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6항 중 “해당안전”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해당안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br>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해 서울특별시 <u>인구변화대응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br><br>1. <u>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br>2. ~ 5. (생략)                     | 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br>-----<br>----- <u>심의·자문하기</u> ---<br>----- <u>인구정책위원회</u> -----<br>-----<br>-.<br>1. <u>기본계획 및</u> -----<br>-----<br>2. ~ 5. (현행과 같음)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생략)<br>③ (생략)<br>1. ~ 3. (생략)<br>4. <u>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u><br><u>&lt;신설&gt;</u><br><br>④·⑤ (생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br>-----<br>----- <u>20명</u> -----<br>-----.<br>②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br>1. ~ 3. (현행과 같음)<br>4. <u>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br>5. <u>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br>④·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안전---

⑦·⑧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위원회 자문 기능 추가, 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구성 다양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주무관 ☎ 2133-664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직속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 증원(+4명)  
 - 경감 +4명
-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5급이하 △1 → 전문경력관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4. 8. 29. ~ 9. 19.) 결과: 의견없음  
 (2) 산·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167명”을 “19,17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별표 4의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5급 이하 소계 | 10,207 |  |
| 전문경력관 소계 | 161    |  |

같은 표 아래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6의 경찰공무원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정관 다음에 경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경찰공무원 계 | 7 |  |  |   |  |  |
| 경감      | 4 |  |  | 4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6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계      | 본청 | 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
|---------|--------|----|-------|------|-----|---------|
| 총계      | 11,730 |    |       |      |     |         |
| (생략)    |        |    |       |      |     |         |
| 일반직계    | 10,700 |    |       |      |     |         |
| (생략)    |        |    |       |      |     |         |
| 5급이하소계  | 10,208 |    |       |      |     |         |
| 전문경력관소계 | 160    |    |       |      |     |         |
| (생략)    |        |    |       |      |     |         |
| (생략)    |        |    |       |      |     |         |
| (생략)    |        |    |       |      |     |         |
| (생략)    |        |    |       |      |     |         |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9,171명 -----.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별표 4] -----

-----

-----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 구분     | 계 | 본청 | 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
|--------|---|----|-------|------|-----|---------|
| 경찰공무원계 | 3 |    |       |      |     |         |
| (생략)   |   |    |       |      |     |         |
| 경정     | 1 |    |       |      |     | 1       |
| <신설>   |   |    |       |      |     |         |
| (생략)   |   |    |       |      |     |         |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 구분       | 계 | 본청 | 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
|----------|---|----|-------|------|-----|---------|
| 경찰공무원계   | 7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경정       | 1 |    |       |      |     | 1       |
| 경감       | 4 |    |       | 4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감 4명 증원 및 일부 직군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지출          | ○ 인력운영경비 | 367,733 | 376,926 | 386,349 | 396,008 | 405,908 | 1,932,924 |
|             | 소계(a)    | 367,733 | 376,926 | 386,349 | 396,008 | 405,908 | 1,932,924 |
| 수입          | ○        |         |         |         |         |         |           |
|             | 소계(b)    |         |         |         |         |         |           |
| □ 총 비용(a-b) |          | 367,733 | 376,926 | 386,349 | 396,008 | 405,908 | 1,932,924 |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2.5%( ' 25년 잠정기준) 적용 추계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367,733 | 376,926 | 386,349 | 396,008 | 405,908 | 1,932,924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367,733 | 376,926 | 386,349 | 396,008 | 405,908 | 1,932,924 |

###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 2133-6729)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4 증가

- 일반직 : (-)
  - 관리운영직 7급 △1, 전문경력관 나군 +1
- 경찰 : (+4)
  - 경감 +4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월 기준) : +367,733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소요비용     | 세 부 내 역                                                                                                                                                                                                                                                                                                              |
|-----|----------|----------------------------------------------------------------------------------------------------------------------------------------------------------------------------------------------------------------------------------------------------------------------------------------------------------------------|
| 합 계 | +367,733 | <p>◆ 총 계 : +367,733</p> <p>[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367,733</p> <p>▷ 관리운영직 7급(△1) : <math>77,587 \times \triangle 1\text{명} = -77,587</math></p> <p>▷ 전문경력관 나군(+1) : <math>73,264 \times 1\text{명} = 73,264</math></p> <p>▷ 경감(+4) : <math>93,014 \times 4\text{명} = 372,056</math></p> <p>※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p> |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9. 12. ~ 10. 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한문기(☎ 2133-6739)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법학전문대학원” 을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을 “도시보건대학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대학원)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 제5조(대학원)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u>법학전문대학원</u>                                 | 2. -----<br>-----<br>----- <u>법학전문대학원</u> , <u>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u> |
| 3.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특수대학원으로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u>국제도시과학대학원</u> , <u>도시보건대학원</u> | 3. -----<br>-----<br>----- <u>도시보건대학원</u>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한문기 (☎ 2133-6739)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기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요하는”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2133-6691)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 공공사용”을 “공공사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을 “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관리대행)”을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을 “관리대행업자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를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란 중 “교통정보과”를 모두 “미래첨단교통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 을 “요양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 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 요하는” 을 “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 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경우” 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분해를 요하는” 을 “분해가 필요한”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 을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기획관”을 “건축기획관”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관”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다목 단서 중 “보온을 요하는”을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보온을 요하는”을 각각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회복을 요하는” 을 “회복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을 요하는” 을 “기술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설치를 요하지”를 “설치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12조의1제2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요하거나”를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을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을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노동정책담당관” 을 “노동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을 “장애인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빅데이터담당관” 을 “데이터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을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으로 한다.

제79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br>-----<br>-----.                                            |
|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1. -----<br>-----<br>-----.                                                     |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 <u>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 라. 「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 」 -----<br>-----<br>-----<br>-----<br>-----<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u>사용</u> <u>공공사용</u>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br>----- <u>공공</u><br><u>사용</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br>-----<br>-----<br>-----<br>-----.                                     |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인은 <u>정보공개담당관</u> 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 <u>정보시스템과장</u> -----<br>-----<br>-----<br>-----.                                                     |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 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u>정보공개담당관</u> 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br>-----<br>-----<br>-----<br>-----<br>----- <u>정보시스템과장</u> -----<br>-----<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장 <u>설치 및 관리 · 운영의 위탁</u><br>제7조(관리 · 운영의 관리대행) ① ~ ③ (생략)                                                 | 제2장 <u>설치 및 관리 · 운영의 대행</u><br>제7조(관리 · 운영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생략)<br>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수탁기관</u> 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③ (생략) |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u>관리대행업자</u> 를 -----<br>-----<br>-----.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② (생략)                     |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③ | -----      | <u>화재</u>                                                |  |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방</u>                             | ③ -----                                                             | ③ -----                  | -----      | <u>안전조사</u> -----                                        |  |
| <u>특별조사</u>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 -----                                                               | -----                    | -----      | -----                                                    |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 <b>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b>                              |                                                                     | <b>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b>   |            |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연락처                                                      |  |
|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적발일시                                                | 적발일시                                                                | 적발일시                     | 적발일시       | 적발일시                                                     |  |
| 대상건물                                                | 건물명(상호명)                                                            | 주소 또는 위치                 | 대상건물       | 건물명(상호명)                                                 |  |
| 신 고 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  |
| 항                                                   |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등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br>신청인                                                        |                          |            | 년 월 일<br>신청인                                             |  |
|                                                     | (서명 또는 인)<br>○○ 소방서장 귀하                                             |                          |            | (서명 또는 인)<br>○○ 소방서장 귀하                                  |  |
| ※ 불임자료                                              |                                                                     | ※ 불임자료                   |            |                                                          |  |
|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                                                                     |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br>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br>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br>한다.<br>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br>원회 및 <u>중앙건설기술심의회</u><br><u>위원회의</u> 위원<br>2. <u>한국시설안전공단</u> , 한국산업<br>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br>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br>연구위원급 이상인 자<br>3. (생략) | 제4조(위촉) -----<br>-----<br>-----<br>----.<br>1. -----<br>----- <u>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u><br><u>회</u> -----<br>2. <u>국토안전관리원</u> -----<br>-----<br>-----<br>-----<br>3.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br>----- <u>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u> -----<br>-----<br>-----<br>-----. |
|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 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br>-----.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① -----<br>-----<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재정 투·융자 심사</u>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 2. <u>투자심사</u> -----<br>-----                                                        |
| 3. ~ 5. (생략)                                                                                                         | 3. ~ 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br>-----<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시민협력과장</u> 으로 한다. | ⑤ -----<br>----- <u>평</u><br><u>가담당관</u> -----. |
| ⑥ ~ ⑩ (생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br>-----<br>-----<br>---. -----<br>-----<br>-----<br>-----<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분임기금운용관 : <u>남북협력과장</u>                                                                                                                                                                           | 2. ----- <u>평화기반조성과장</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                                |           |                            | 개정안                                                                                                                                                                        |                                |           |                              |
|----------------------------------------------------------------------------------------------------------------------------------------------------------------------------|--------------------------------|-----------|----------------------------|----------------------------------------------------------------------------------------------------------------------------------------------------------------------------|--------------------------------|-----------|------------------------------|
| [별표 2]                                                                                                                                                                     |                                |           |                            | [별표 2]                                                                                                                                                                     |                                |           |                              |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                                |           |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                                |           |                              |
| 연<br>번                                                                                                                                                                     | 통합대상                           | 주관<br>부서  | 사업시행 및<br>유지관리부서           | 연<br>번                                                                                                                                                                     | 통합대상                           | 주관<br>부서  | 사업시행 및<br>유지관리부서             |
| 1                                                                                                                                                                          | 차량신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1                                                                                                                                                                          | 차량신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 2                                                                                                                                                                          | 차량신호등 + 보행신<br>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2                                                                                                                                                                          | 차량신호등 + 보행신<br>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 3                                                                                                                                                                          | 차량신호등 + CCTV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br><u>교통정보과</u> | 3                                                                                                                                                                          | 차량신호등 + CCTV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br><u>미래첨단교통과</u> |
| 4                                                                                                                                                                          |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br>등 + 가로등 + CCTV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br><u>교통정보과</u> | 4                                                                                                                                                                          | 차량신호등 + 보행신호<br>등 + 가로등 + CCTV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br><u>미래첨단교통과</u> |
| 5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5                                                                                                                                                                          | 보행신호등 + 가로등                    | 교통<br>운영과 | 도로사업소, 구청                    |
|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3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b>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b></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br/>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li> <li>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br/>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br/>※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br/>※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li>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li> <li>4. 이식을 원하는 경우<br/>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br/>※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원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br/>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br/>※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li>5. 제거하는 경우<br/>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br/>※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br/>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br/>※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ol>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b>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b></p> <p style="text-align: center;">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br/>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li> <li>2. 상당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br/>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br/>※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br/>※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li>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li> <li>4. 이식을 원하는 경우<br/>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br/>※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원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br/>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br/>※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li>5. 제거하는 경우<br/>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br/>※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br/>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br/>※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li> </ol>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br>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br>1. (생략)<br>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br>3. ~ 7. (생략)<br>② (생략) |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br>-----<br>-----<br>-----<br>-----,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br>3. ~ 7.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5조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생략)                                                                               |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br>-----<br>-----,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u>긴급을 요하는</u> 공사는 제외                          | 2. -----<br>-----, -----<br>----- <u>긴급한</u> --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br>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br>해촉할 수 있다.<br>1. (생략)<br>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br>3. ~ 6. (생략) | 제10조(위원의 해촉)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br>3. ~ 6.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병가) ① (생략)                                                                                | 제22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u> 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br>-----<br>----- <u>요양</u><br><u>이 필요한</u> -----<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br>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u> 서울특별<br>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br>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br>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br>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br>수 있다.<br>② · ③ (생략)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br>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u> -----<br>-----<br>-----<br>-----<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        |  | 개 |  |  | 정                                                                                                                                                                                                                                                                              |        |  | 안 |  |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  |   |  |  |
| 대<br>표<br>자                                                                                                                                                                                                                                                                    | 근무부서   |  |   |  |  | 대<br>표<br>자                                                                                                                                                                                                                                                                    | 근무부서   |  |   |  |  |
|                                                                                                                                                                                                                                                                                | 직    급 |  |   |  |  |                                                                                                                                                                                                                                                                                | 직    급 |  |   |  |  |
|                                                                                                                                                                                                                                                                                | 성    명 |  |   |  |  |                                                                                                                                                                                                                                                                                | 성    명 |  |   |  |  |
| 보완을 요하는 사항                                                                                                                                                                                                                                                                     |        |  |   |  |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  |   |  |  |
| 보    완    이    유                                                                                                                                                                                                                                                               |        |  |   |  |  | 보    완    이    유                                                                                                                                                                                                                                                               |        |  |   |  |  |
| 보    완    기    한                                                                                                                                                                                                                                                               |        |  |   |  |  | 보    완    기    한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직장협의회설<br/>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br/>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br/>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br/>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br/>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br/>               (기관명)                    (인)             </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직장협의회설<br/>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br/>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br/>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br/>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br/>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br/>               (기관명)                    (인)             </p>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회의) ① · ② (생략)        | 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 ③ -----                |
|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 -----                  |
| · 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         | -----                  |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u> | -----, ---- <u>긴</u>   |
| <u>급을 요하는</u> 등 부득이한 사정   | <u>급한 경우</u> -----     |
| 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한다.                       | ---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1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br>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br>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br>1. (생략)<br>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br>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br>3. ~ 6. (생략) | 제13조(위원의 해촉)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3. ~ 6.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2조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br>-----<br>-----.                |
| 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1. -----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3조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생략)<br>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br>1. (생략)<br>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br>3.·4. (생략) | 제3조(자격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 (현행과 같음)<br>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br>-----<br>-----<br>3.·4.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

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

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

1. · 2. (생 략)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

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

는 건설기계에는 이에 소요되

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

한다.

②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 공사명 | 장소 | 공사구분 | 공사규모 | 공사비  |        |       | 공사기간 | 비고 |
|-----|----|------|------|------|--------|-------|------|----|
|     |    |      |      | 총공사비 | 건설기계부분 | 그밖의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분해가 필요

한 -----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 공사명 | 장소 | 공사구분 | 공사규모 | 공사비  |        |       | 공사기간 | 비고 |
|-----|----|------|------|------|--------|-------|------|----|
|     |    |      |      | 총공사비 | 건설기계부분 | 그밖의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2. 건설기계 공사개요</p> <p>첨부: 공사 설계도서</p> <p>「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 도급공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자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서울특별시      <u>도로교통사업소장</u>      귀 하</p> </div> <div style="width: 48%;"> <p>2. 건설기계 공사개요</p> <p>첨부: 공사 설계도서</p> <p>「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 도급공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자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서울특별시      <u>도로사업소장</u>      귀 하</p> </div> </div>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br>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br>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br>1. ~ 3. (생략)<br>4.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br>5. (생략) | 제2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br>-----<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4.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br>5.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br>-----<br>-----<br>-----.                             |
|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br>따라 단순한 <u>정리</u> 를 요하는<br>사항                                                                                                           | 1. -----<br>----- <u>정리가 필요한</u> -----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                                                                                                                       |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주택공급기획관</u> 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br>-----<br>-----<br>-----<br><u>건축기획관</u> -----<br>-----<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④ ~ ⑩ (생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7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br>~ ④ (생략)<br>⑤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br>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br>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br>1. 6개월 이상 <u>장기치료를 요하</u><br><u>는</u>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br>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br>어려운 경우<br>2. (생략)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br>~ ④ (현행과 같음)<br>⑤ -----<br>-----<br>-----.<br>1. ----- <u>장기 치료가 필요</u><br><u>한</u> -----<br>-----<br>-----<br>2.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8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생략)<br>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⑤ (생략) |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br>-----<br>-----.<br>⑤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1. -----<br>-----<br>-----<br>-----<br>--. |
| 가. ~ 라.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 마. -----<br>----- <u>치료가 필요한</u><br>-----  |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0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실시협약예고 대상) -----<br>-----<br>-----<br>-----, ----- <u>긴급한</u><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br>(생략)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 ② -----<br>-----<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br>-----<br>-- 도로기획관--.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9조(행위의 금지) ① · ② (생략)                                                                                        | 제9조(행위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                                                            | ③ -----<br>-----<br>-----                             |

| 현행                                                                                                                       | 개정안                                                                          |
|--------------------------------------------------------------------------------------------------------------------------|------------------------------------------------------------------------------|
| 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5. -----<br>--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 다. -----<br>-----.<br>----- <u>보온이 필요한</u> -----<br>-----<br>-----<br>-----. |
| 라. (생략)                                                                                                                  | 라. (현행과 같음)                                                                  |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도로점용 허가증</div> <p>제 호 :<br/>주 소 :<br/>성 명 : 생년월일 :</p> <p>「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청 장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허가내용</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1.점용장소</td> <td>2.점용면적</td> </tr> <tr> <td>3.취급품목</td> <td></td> </tr> <tr> <td>4.점용목적</td> <td>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td> </tr> <tr> <td>6.점용기간</td> <td>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td> </tr> <tr> <td>7.점용료</td> <td></td> </tr> <tr> <td>허가조건</td> <td></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li> <li>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li> <li>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li> <li>「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u>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li> <li>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li> </ol> <p>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li> <li>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li> </ol> | 허가내용                          |  | 1.점용장소 | 2.점용면적 | 3.취급품목 |  | 4.점용목적 |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 6.점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 7.점용료 |  | 허가조건 |  | <p>[별지 제2호서식]</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도로점용 허가증</div> <p>제 호 :<br/>주 소 :<br/>성 명 : 생년월일 :</p> <p>「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청 장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허가내용</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1.점용장소</td> <td>2.점용면적</td> </tr> <tr> <td>3.취급품목</td> <td></td> </tr> <tr> <td>4.점용목적</td> <td>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td> </tr> <tr> <td>6.점용기간</td> <td>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td> </tr> <tr> <td>7.점용료</td> <td></td> </tr> <tr> <td>허가조건</td> <td></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li> <li>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약품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li> <li>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li> <li>「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이</u> 필요한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건포(乾脯)류 및 김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li> <li>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li> </ol> <p>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가공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li> <li>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li> </ol> | 허가내용 |  | 1.점용장소 | 2.점용면적 | 3.취급품목 |  | 4.점용목적 |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 6.점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 7.점용료 |  | 허가조건 |  |
| 허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점용장소                                                                                                                                                                                                                                                                                                                                                                                                                                                                                                                                                                                                                                                                                                                                                                                                                                                                                                                                                                                                                                                                                                                                                                                                                                                                                                                                                                                                                                                                                                                                                                                                                                                     | 2.점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취급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점용목적                                                                                                                                                                                                                                                                                                                                                                                                                                                                                                                                                                                                                                                                                                                                                                                                                                                                                                                                                                                                                                                                                                                                                                                                                                                                                                                                                                                                                                                                                                                                                                                                                                                     |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점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점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점용장소                                                                                                                                                                                                                                                                                                                                                                                                                                                                                                                                                                                                                                                                                                                                                                                                                                                                                                                                                                                                                                                                                                                                                                                                                                                                                                                                                                                                                                                                                                                                                                                                                                                     | 2.점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취급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점용목적                                                                                                                                                                                                                                                                                                                                                                                                                                                                                                                                                                                                                                                                                                                                                                                                                                                                                                                                                                                                                                                                                                                                                                                                                                                                                                                                                                                                                                                                                                                                                                                                                                                     |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점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점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시설물<br>종류<br>( ) | 관리<br>번호           | ○○○○년 - ○○구 - ○○○    |   |                              |
|                  | 설치<br>장소           | 서울특별시                | 구 | (도로명) (건물번호) 앞<br>(주요건물명 기재) |
|                  | 시 설<br>물<br>규<br>격 | 가로 (m)×세로 (m)×높이 (m) |   |                              |
|                  | 취급<br>품목           |                      |   |                              |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별지 제3호서식]

##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시설물<br>종류<br>( ) | 관리<br>번호           | ○○○○년 - ○○구 - ○○○    |   |                              |
|                  | 설치<br>장소           | 서울특별시                | 구 | (도로명) (건물번호) 앞<br>(주요건물명 기재) |
|                  | 시 설<br>물<br>규<br>격 | 가로 (m)×세로 (m)×높이 (m) |   |                              |
|                  | 취급<br>품목           |                      |   |                              |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료를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취급품목 등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 "임차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 현행                                                                                                                                                                                                                                                                                                                                                                                                                                                                                                                                                                                                                                                                                                                                                                                                                                                                                                                                                                                                                                                                                                                                                                                                                                                                                                                                                                                                                                                                                                                                                                                            | 개정안                                                                                                                                                                                                                                                                                                                                                                                                                                                                                                                                                                                                                                                                                                                                                                                                                                                                                                                                                                                                                                                                                                                                                                                                                                                                                                                                                                                                                                                                                                                                                                                           |
|-----------------------------------------------------------------------------------------------------------------------------------------------------------------------------------------------------------------------------------------------------------------------------------------------------------------------------------------------------------------------------------------------------------------------------------------------------------------------------------------------------------------------------------------------------------------------------------------------------------------------------------------------------------------------------------------------------------------------------------------------------------------------------------------------------------------------------------------------------------------------------------------------------------------------------------------------------------------------------------------------------------------------------------------------------------------------------------------------------------------------------------------------------------------------------------------------------------------------------------------------------------------------------------------------------------------------------------------------------------------------------------------------------------------------------------------------------------------------------------------------------------------------------------------------------------------------------------------------|-----------------------------------------------------------------------------------------------------------------------------------------------------------------------------------------------------------------------------------------------------------------------------------------------------------------------------------------------------------------------------------------------------------------------------------------------------------------------------------------------------------------------------------------------------------------------------------------------------------------------------------------------------------------------------------------------------------------------------------------------------------------------------------------------------------------------------------------------------------------------------------------------------------------------------------------------------------------------------------------------------------------------------------------------------------------------------------------------------------------------------------------------------------------------------------------------------------------------------------------------------------------------------------------------------------------------------------------------------------------------------------------------------------------------------------------------------------------------------------------------------------------------------------------------------------------------------------------------|
| <p>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p> <p>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p> <p>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li> <li>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li> <li>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을 요하는</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li> <li>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li> </ol> <p>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li> <li>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li> <li>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li> <li>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li> </ol> <p>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p> | <p>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p> <p>8. 그 밖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p> <p>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li> <li>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li> <li>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u>보온이 필요한</u>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대부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li> <li>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li> </ol> <p>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차자"가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부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li> <li>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li> <li>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li> <li>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li> </ol> <p>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대부자"는 "임차자"가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임차자"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제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br/>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p> <p>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 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br/>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br/>○ (인)</p> <p>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br/>(건물번호) 앞<br/>생년월일 :<br/>성명:                  (인)</p> | <p>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 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제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br/>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p> <p>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 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br/>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임대인(대부자)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br/>○ (인)</p> <p>임차인(임차자) : 서울특별시                  구                  (도로명)<br/>(건물번호) 앞<br/>생년월일 :<br/>성명:                  (인)</p>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2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생략)<br>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서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br>3. 4. (생략) |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 정리가 필요한 --<br>--<br>3. 4. (현행과 같음) |
|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서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br>2. ~ 4. (생략)          |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br>-----<br>-----<br>----.<br>1. -----<br>----- 정리가 필요한 --<br>--<br>2. ~ 4.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3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의4(위원의 해촉)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3. ~ 6.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4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br>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br>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br>할 수 있다.<br>1. (생략)<br>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br>3. ~ 7. (생략)<br>② (생략) |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br>3. ~ 7.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5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br>(생략)<br>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u>전문성을 요하는</u>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br>(현행과 같음)<br>④ -----<br>-----<br>-----<br>-----, ---<br>----- <u>전문성이 필요한</u> ----<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6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u>전문성을 요하는</u>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br>②·③ (생략) | 제6조(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 ----- <u>전문성이 필요한</u> -----<br>-----<br>-----<br>-----<br>-----<br>-----.<br>②·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7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br>-----<br>-----<br>-----, ---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u> -----<br>-----<br>-----.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3. ~ 7. (생략)                                                                                                      | 3. ~ 7.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8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병가) ① (생략)                                                                          | 제27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을 요하는</u>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br>-----<br>----- <u>요양이 필요한</u><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br>-----<br><u>전문지식이 필요한</u> -----<br>-----<br>-----<br>-----<br>-----.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0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5조(회의) ① -----<br>-----<br>-----<br>-----<br>-----<br>-----<br>-----, -----<br><u>긴급한</u> -----<br>-----.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br>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br>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br>-----<br>-----<br>-----.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 | 3.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4. ~ 7. (생략)                                                           | 4. ~ 7.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2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용도) ① (생략)                                                                 | 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② -----<br>-----<br>-----<br>-----.                     |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1. -----<br>-----                                       |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u>긴급을 요하는</u> 설치 및 보수·보강           | 라. -----<br>-----<br>-----<br><u>긴급한</u> -----<br>----- |
| 마. ~ 자. (생략)                                                                   | 마. ~ 자. (현행과 같음)                                        |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br>-----<br>-----,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u>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u>장기 치료가 필요한</u> -----<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4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br>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br>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br>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br>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br>제외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br>-----<br>-----<br>-----, -----<br>-----,<br>1. (현행과 같음)<br>2. --- <u>치료가 필요한</u> -----<br>-----<br>----- |
| 1. (생략)                                                                                                                        |                                                                                                                               |
| 2. 장기 <u>치료를 요하는</u> 질병 또<br>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br>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3. ~ 6.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5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br>(생략)                                                                                                    | 제8조(수탁 교육·훈련 실시)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수탁 교육·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u>긴급을 요하는</u> 수탁 교육·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br>-----<br>-----<br>-----, -----<br>--- <u>긴급한</u> -----<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6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u> | ② -----<br>-----<br>-----<br>-----, -----<br><u>긴급한</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7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br>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br>해촉할 수 있다.<br>1.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br>2. ~ 4. (생략) | 제5조(위원의 해촉) -----<br>-----<br>-----<br>-----.<br>1.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br>2. ~ 4.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8조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br>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br>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br>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                        | 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3. ~ 6.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49조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u>회복을</u>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2. -----<br>-----<br>-----<br>-----<br>-----<br>-----<br>-----<br>----- <u>회복이 필요한</u> -----<br>-----.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3. ~ 5. (생략)                                                | 3. ~ 5.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br>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br>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br>·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br>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br>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br>할 수 있다.<br>1.·2. (생략)<br>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u>기술을</u><br><u>요하는</u> 사무<br>4. (생략)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br>-----<br>-----<br>-----<br>-----<br>-----,<br>1.·2. (현행과 같음)<br>3. ----- <u>기술이</u><br><u>필요한</u> --<br>4.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2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시장은<br>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br>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br>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br>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조정위원의 해촉) -----<br>-----<br>-----<br>-----.<br>-----.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장기 <u>치료를</u> 요하는 질병 또<br>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br>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br>경우                                                | 3. --- <u>치료가 필요한</u> -----<br>-----<br>-----<br>--        |
| 4. ~ 7. (생략)                                                                                                          | 4. ~ 7.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br>1. ~ 3. (생략)<br>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u>설치를 요하지</u> 아니할 것<br>5.·6. (생략)<br>② ~ ⑤ (생략) | 제17조(가설건축물) ① -----<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4. -----<br>----- <u>설치가 필요하지</u> -----<br>-----<br>5.·6.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4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br>② ~ ⑦ (생략)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br>-----<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br>② ~ ⑦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5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br>(생략)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br>(현행과 같음)                                     |
| ⑤ 심의 안건이 <u>긴급을 요하거나</u>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⑤ ----- <u>긴급한 경우이거나</u> -----<br>-----<br>-----<br>-----<br>-----. |
| ⑥ ~ ⑩ (생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생략)                                                                                                      |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u>긴급을 요하거나</u> 유사·반복되는 사항                                                                            | 2. -----<br>-- <u>긴급한 경우이거나</u> -----<br>-----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6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br>1. (생략)<br>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u>건강진단을 요하거나</u>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br>3. 4. (생략)<br>② ~ ④ (생략) | 제8조(감면)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 <u>건강진단</u><br><u>이 필요하다거나</u> -----<br>-----<br>3. 4.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생략)<br>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④ (생략)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 ---<br>-- <u>긴급하거나</u> -----<br>-----<br>---.<br>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8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회의) ①·② (생략)                                                                                                          | 제12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br>-----<br>-----<br>-----<br>-----, ---- <u>긴급하거나</u> -<br>-----<br>-----<br>--. |
| ④ ~ ⑦ (생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                                                                                                   |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u>여성가족실장</u> -----<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④ ~ ⑧ (생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59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회의) ① ~ ③ (생략)                                                                                                |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br>-----<br>-----<br>-----, ---<br>-- <u>긴급하거나</u> -----<br>-----<br>--- |
| ⑤ · ⑥ (생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0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생략)                                                                                 | 제4조의8(시정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점검목적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br>-----<br>-----, ---<br>-- <u>긴급한 경우이거나</u> -----<br>-----<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1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감사담당관</u> 이 된다.                                                                         | ③ -----<br>---- <u>청렴담당관</u> -----.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br>-----<br>-----<br>-----, -----<br><u>긴급하거나</u> -----<br>-----<br>-. |
| ⑦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2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회의) ① (생략)<br>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③ (생략)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 <u>긴급하거나</u> -----<br>-----,<br><br>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3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회의) ①·② (생략)                                                      | 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u>긴급을</u> 요하거나<br>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br>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br>수 있다. | ③ ----- <u>긴급하거나</u> -----<br>-----<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4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u>자원순환과</u> 협의회 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② -----<br>-----<br>----- <u>자원회수시설과</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5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 현행                                                         |                 |                                             |                         | 개정안                                                        |                 |                                             |                         |
|------------------------------------------------------------|-----------------|---------------------------------------------|-------------------------|------------------------------------------------------------|-----------------|---------------------------------------------|-------------------------|
| <b>[별표]</b><br><br><b>서울특별시 위기<br/>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b> |                 |                                             |                         | <b>[별표]</b><br><br><b>서울특별시 위기<br/>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b> |                 |                                             |                         |
| 주관국(과)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국(과)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 여성가족<br>정책실<br>(권익보호<br>담당관)                               | ◦십대여성일<br>시지원센터 | 동작구 상도로<br>152-1(상도동)<br>(야간전용<br>일시침터 비공개) | 위기 십대여성<br>상담 및<br>일시보호 | 여성가족실<br>(양성평등<br>담당관)                                     | ◦십대여성일<br>시지원센터 | 동작구 상도로<br>152-1(상도동)<br>(야간전용<br>일시침터 비공개) | 위기 십대여성<br>상담 및<br>일시보호 |
|                                                            | ◦십대여성건<br>강센터   | 마포구<br>어울마당로5길<br>34(서교동)                   | 위기 십대여성<br>건강지원         |                                                            | ◦십대여성건<br>강센터   | 마포구<br>어울마당로5길<br>34(서교동)                   | 위기 십대여성<br>건강지원         |
|                                                            | ◦관악늘푸른<br>교육센터  | 관악구<br>관천로113(신림동)                          | 위기 십대여성<br>교육 및 자립지원    |                                                            | ◦관악늘푸른<br>교육센터  | 관악구<br>관천로113(신림동)                          | 위기 십대여성<br>교육 및 자립지원    |
|                                                            | ◦강북늘푸른<br>교육센터  | 강북구 도봉로98길<br>33(번동)                        | 위기 십대여성<br>교육 및 자립지원    |                                                            | ◦강북늘푸른<br>교육센터  | 강북구 도봉로98길<br>33(번동)                        | 위기 십대여성<br>교육 및 자립지원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u>여성가족정책실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br>-----<br>-----<br>-----, -----<br>----- <u>여성</u><br><u>가족실장</u> -----<br>--, -----<br>-----<br>---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7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br>----- <u>여성가족실장</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8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생략)<br>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생략)<br>2. <u>여성가족정책실장</u> , 재무국장, 재정기획관<br>3. (생략)<br>④·⑤ (생략)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u>여성가족실장</u> -----<br>-----<br>3. (현행과 같음)<br>④·⑤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69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u>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② -----<br>-----<br>-- <u>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u> -----<br>--.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0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br>② (생략)<br>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br>시장이 위촉한다.<br>1. 시 행정1부시장, <u>여성가족정<br/>책실장</u> , 평생교육국장<br>2. ~ 5. (생략)<br>④ · ⑤ (생략)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 ----- <u>여성가족실<br/>장</u> -----<br>2. ~ 5. (현행과 같음)<br>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1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여성가족정책실장</u> 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br>-----<br>---- <u>여성가족실장</u> ----<br>-----<br>-----<br>---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2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br>(생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br>(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br>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노동정책담당관</u> 으로 한다. | ⑤ -----<br>----- <u>노동정책과장</u> -----.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r>① · ② (생략)<br>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u>소상공인 담당관</u>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br>④ ~ ⑦ (생략) |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 <u>소상공인 정책과장</u> -----<br>--.<br>④ ~ ⑦ (현행과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br>-----<br>-----<br>---. -----<br>-----<br>-----<br>-----<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분임기금운용관                                                                                                                                                                                           | 2. -----                                                                                                             |
| 가. 융자계정 : <u>소상공인담당관</u>                                                                                                                                                                             | 가. ----- <u>소상공인정책과</u><br><u>장</u>                                                                                  |
| 나. (생략)                                                                                                                                                                                              | 나. (현행과 같음)                                                                                                          |
| 다.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                                                                                                                                                                          | 다. ----- <u>공정경제과장</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                                                                                                                                                                                      | ② -----                                                                                                              |

| 현행                                  | 개정안                      |
|-------------------------------------|--------------------------|
|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br>-----<br>--.    |
| 1. 용자계정 : <u>소상공인담당관</u>            | 1. ----- <u>소상공인정책과장</u>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3. 사회적경제계정 : <u>공정경제담당관</u>         | 3. ----- <u>공정경제과장</u>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5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br>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공정경제담당관</u> 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 <u>공정경제과장</u>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7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br>~ ⑤ (생략)<br>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빅데이터담당관</u> 으로 한다.<br>⑦ (생략)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br>~ ⑤ (현행과 같음)<br>⑥ -----<br>-----<br>---- <u>데이터전략과장</u> -----<br>--.<br>⑦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8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br>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br>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br>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br>경제일자리기획관<br>2. (생략) |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 -----<br>--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br>-----<br>2.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79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생략)<br>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br>---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0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br>-----<br>-----<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1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br>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br>1.·2. (생략)<br>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br>4. (생략) |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br>-----<br>-----<br>-----<br>-----.<br>1.·2. (현행과 같음)<br>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br>-----<br>-----<br>-----<br>4. (현행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2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br>(생략)<br>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②<br>(현행과 같음)<br>③ -----<br>-----<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 조례」-----<br>-----<br>-----.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지침서 등) ① (생략)                                                                                                             | 제6조(지침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br>-----<br>-----<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br>-----<br>-----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br>-----. |
| 제8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 제8조(자문) -----<br>-----<br>----- 양성평등위원회 -----<br>----- 양성평등위원회 -----.                         |

## 신·구조문대비표

(제84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br>-----<br>-----<br>-----<br>-----<br>-----<br>-----<br>-----.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박준하 주무관(2133-6691)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상설운영에서 비상설운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하 “충전시설”)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요금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충전종료 후 충전시설을 계속 점거하는 요금을 말하는 용어로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나.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 충전시설 점거 사용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다.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라. 당연직 위원을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1호)
- 마.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안 제8조제4항)
- 바. 서울특별시 소유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사.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2호)
- 아. 그 밖에 자구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 개선의견                            | 반영사항        |
|---------------------------------|-------------|
| 충전시설 점거사용료 산출기준 규정 신설           | 반영 (제8조제3항) |
| 이해 충돌 발생시 해촉 규정 필요              | 미반영         |
| 부과징수 처리절차 및 과오납, 이의제기 등 처리규정 필요 | 반영 (제8조제4항)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4. 8. 16. ~ 9. 5.)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충전 완료시 자다가 새벽이라도 나가서 충전기를 빼야한다면 불편해서 전기차 구매가 떨어질 것이며, 과충전이 배터리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점거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에 반대함

※ (미반영 사유) 충전시설 점거사용료는 과충전 방지나 화재 예방 대책이 아닌 '충전완료 후 빠른 출차 유도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 조문이 신설되는 사항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차진경 (☎2133-4408)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 을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 ) 으로,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출연기관” 을 “출자·출연 기관”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충전의 제9조) 제1항 중 “충전료 산출” 을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8조(충전의 제9조) 제2항제1호 중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를 “위원회 회의는” 으로, “개회하고” 를 “개최하고” 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9조(충전의 제8조)의 제목 “(충전료 징수)” 를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충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 을 “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충전료”를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 (생략)<br>4. “서울특별시 <u>공용차량</u> ”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br>5. ~ 10.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 3. (현행과 같음)<br>4. ----- <u>공무용차량</u> -----<br>-----<br>-----<br>-----<br>-----<br>-----.<br>5. ~ 10. (현행과 같음)<br>11. “ <u>충전시설 점거 사용료</u> ”란 <u>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말한다.</u> |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br>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u>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br>① -----<br>-----<br>-----<br>-----<br>-----<br>-----<br>-- <u>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u>                                                                                                                                                   |

·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출연기관”-----

----- 공무용차량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자·출연기관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충전료 및 충전시설 접거 사용료 징수) ① -----

-- 자-----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차량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않는 자에게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의 범위(단, 1일 기준 최대 10만원으로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충전종료 후 15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차가 불가능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충전료 등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8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  
--- 충전료 및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 -----  
-----  
-----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

2.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⑥ (생략)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생략)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  
-----  
-----  
-----  
-----.

1.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  
-----  
----- 개최하고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  
-----  
-----  
-----.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
3.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

-----  
-----  
-----  
--.

1. (현행과 같음)
2. ----- 충전료 및 충전 시설 점거 사용료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차진경(☎2133-4408)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안 제명)

-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다.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안 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라.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신설(안 제5조)

마. 명칭변경(안 제8조, 제9조)

- 관계전문가 ⇒ 전문위원, 심사관 ⇒ 조사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균형 고려
  - 반영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안 제5조제2항)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최왕택 (☎ 2133-4253)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별표]

## 수수료(제10조 관련)

| 신청별          | 조정가액별 수수료                                                                                                                                                    |
|--------------|--------------------------------------------------------------------------------------------------------------------------------------------------------------|
| 알선신청         | 10,000원                                                                                                                                                      |
| 조정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br>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br>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
|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br>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br>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
| 참가신청         |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br>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증거보전신청       | 5,000원                                                                                                                                                       |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에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유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집단 건강피해 청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설치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최왕택(☎ 2133-4253)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 부개정으로 시민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안 제13조제2항)

나. 위원회 조항 재정비(안 제19조 및 제22조)

다.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 2133-6532)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민”을 ““시민””으로, ““시”를 ““시””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제안”을 ““시민제안””으로, “이하 “시장”을 “이하 “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뜻은 -----.                                                           |
|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 “시민”-----<br>-----<br>---“시”-----<br>-----.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5. “시민제안”-----<br>-----이하 “시장”-----<br>-----<br>-----<br>-----<br>-----<br>-----<br>-----. |
| 가.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
| 다. ~ 마. (생략)                                                                                                                       | 다. ~ 마. (현행과 같음)                                                                           |
|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                                                                                                   |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

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신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③ · ④ (생략)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 1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삭제>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① · ②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⑤ (생 략)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불필요

### 4. 작성자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 2133-6532)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입

※ 작성자: 복지실 복지정책과 김선준 (☎ 2133-7346)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10조 · 제11조 (생략) |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요약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복지실 복지정책과 김선준(☎2133-7346)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과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9. 5. ~ 9.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 (☎ 2133-8436)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안심소득” 을 “서울디딤돌소득”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br>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br>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br>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br>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br>1. ~ 3. (생략)<br>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br>긴급복지, <u>서울안심소득</u> 대상<br>자<br>5. (생략)<br>② (생략) |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br>-----<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4. -----<br>----- <u>서울디딤돌소득</u> -----<br>-----<br>5.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8조( <u>서울안심소득</u> ) 시장은 가구<br>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br>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br>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br>으로 <u>서울안심소득</u> (기준 중위소<br>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br>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br>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u>서울디딤돌소득</u> ) -----<br>-----<br>-----<br>-----<br>----- <u>서울디딤돌소득</u> -----<br>-----<br>-----<br>-----<br>-----,<br>-----.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추계 요약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시민투표로 인해 선정된 새로운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2133-8436)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 관한 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안 제3조)

- 장애인·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있음(반영)
  - 개선의견: 어울림플라자 이용대상 표현 수정, 이용료 감경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추가
  - 반영사항: 반영완료(제3조제1호, 제4조제2항제7~제8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7.18. ~ 2024.8.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원경진 (☎2133-7444)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 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65세 이상 어르신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



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      | 단 위            | 기준금액                | 부 과 기 준                            |
|---------------|------|----------------|---------------------|------------------------------------|
| 연수교육          |      | 당일<br>반일 이내    | 15,000원 ~ 50,000원   |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               |      | 당일<br>전일(8시간)  | 30,000원 ~ 100,000원  |                                    |
|               |      | 1박2일<br>(12시간) | 45,000원 ~ 150,000원  |                                    |
|               |      | 2박3일<br>(18시간) | 67,000원 ~ 225,000원  |                                    |
| 생활문화·<br>생활체육 |      | 당일             | 5,000원 ~ 50,000원    |                                    |
|               |      | 1개월            | 40,000원 ~ 100,000원  |                                    |
| 수영장           | 수강료  | 1개월<br>(주3회)   | 60,000원 ~ 100,000원  |                                    |
|               | 자유수영 | 1회             | 5,000원 ~ 10,000원    |                                    |
| 연수객실(숙박)      |      | 1박             | 100,000원 ~ 140,000원 |                                    |

※ 일반 프로그램 이용료이며,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 기준금액                | 비 고                                                                                                                                             |
|----------|---------------------|-------------------------------------------------------------------------------------------------------------------------------------------------|
| 공연장      | 350,000원 ~ 550,000원 | 1. 1회(4시간) 단가로서, 1회는 오전(10:00~14:00),<br>오후(14:00~18:00), 야간(18:00~22:00)으로 함<br>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br>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 다목적강당    | 250,000원 ~ 450,000원 |                                                                                                                                                 |
| 문화교실     | 10,000원 ~ 60,000원   | 1.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br>료까지 가산함<br>2.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 대회의실(식당) | 60,000원 ~ 120,000원  |                                                                                                                                                 |
| 세미나실     | 40,000원 ~ 80,000원   |                                                                                                                                                 |
| 분임토의실    | 20,000원 ~ 40,000원   |                                                                                                                                                 |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와 별도로 청구 가능

(앞 쪽)

##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5년
- 비용지급대상 : 민간위탁기관(사무위탁), 서울주택도시공사(시설관리)
  - ▶ 민간위탁기관 : 복지지원시설(연수시설,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수영장, 문화체육센터) 운영
  -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시설, 주차장, 건물관리, 청소, 보안 등 시설의 유지·관리
- 비용추계 내역

##### ① 지출

- ▶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 어울림플라자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자산취득비(도서 및 물품 구입)
-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어울림플라자 재산(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수수료 지급(근거 : 공유재산 업무편람,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
  - 총재산가액(총사업비+개발보수+공시지가)의 0.2~0.5% 지급
  - ※ 시설별(관리범위별) 수수료율 차등 산정(민간위탁 범위 수수료율 0.2%, SH 임대 관리 범위 0.5% 적용)

##### ② 수입

- ▶ 어울림플라자 대관수입 및 이용료 수입: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문화, 체육, 교육연수) 이용료 및 시설(공연장, 다목적홀) 대관에 따른 수입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br>(2026) | 3차년도<br>(2027) | 4차년도<br>(2028) | 5차년도<br>(2029) | 합계         |
|-------------|-------------|----------------|----------------|----------------|----------------|----------------|------------|
| 구분          |             |                |                |                |                |                |            |
| 지출          | ○ 민간위탁금     | 2,535,153      | 7,864,901      | 8,100,849      | 8,343,874      | 8,594,190      | 35,438,967 |
|             | ○ 민간위탁사업비   | 1,940,000      | 30,000         | 30,900         | 31,827         | 32,782         | 2,065,509  |
|             | ○ 공공기관위탁사업비 | 92,320         | 369,282        | 380,360        | 391,771        | 403,524        | 1,637,257  |
|             | 소계(a)       | 4,567,473      | 8,264,183      | 8,512,109      | 8,767,472      | 9,030,496      | 39,141,733 |
| 수입          | ○ 프로그램 이용료  | 353,190        | 2,099,160      | 2,162,135      | 2,226,999      | 2,293,809      | 9,135,293  |
|             | ○ 대관료       | 20,800         | 124,800        | 128,544        | 132,400        | 136,372        | 542,916    |
|             | 소계(b)       | 373,990        | 2,223,960      | 2,290,679      | 2,359,399      | 2,430,181      | 9,678,209  |
| □ 총 비용(a-b) |             | 4,193,483      | 6,040,223      | 6,221,430      | 6,408,073      | 6,600,315      | 29,463,524 |

※ 1차년도는 3개월(25.10~12월) 운영, 2차년도부터 연중 본격운영

※ 3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수입·지출 대비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여 비용추계함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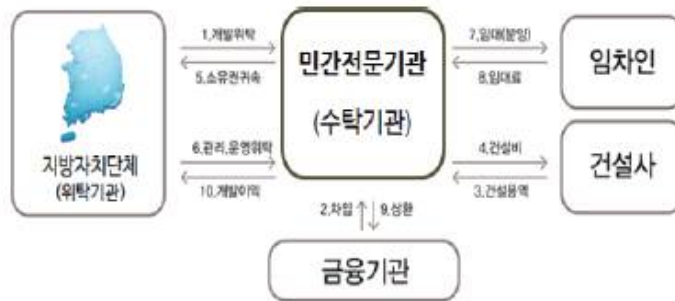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br>(2026) | 3차년도<br>(2027) | 4차년도<br>(2028) | 5차년도<br>(2029) | 합계         |
|----|-------|----------------|----------------|----------------|----------------|----------------|------------|
| 구분 |       |                |                |                |                |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4,567,473      | 8,264,183      | 8,512,109      | 8,767,472      | 9,030,496      | 39,141,733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4,567,473      | 8,264,183      | 8,512,109      | 8,767,472      | 9,030,496      | 39,141,733 |

※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

## 5. 덧붙이는 의견

- 어울림플라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위탁개발)에 따라 위탁 개발로 조성한 사업으로, SH공사에서 어울림플라자 건립비용을 일부 투입함에 따라, 위탁기간(30년 이내)동안 개발비용(개발원리금) 및 관리수수료 등을 SH공사에 매년 지급하여야 함
- SH공사에서 공사채로 부담한 개발비용을 어울림플라자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고, 개발사업의 수입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토록 사업 운영하게 됨
- 이에 따라, 어울림플라자 민간위탁에 대한 수입·지출 외 재산(건축물) 관리, 임대 관리 등에 대한 수입·지출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포함하지 않음

## 〈 공유지 위탁개발 추진 구조 〉



## 〈 관련 규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위탁개발) 제3항 제2호
  -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공유재산 업무편람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수탁기관은 자신의 회계와는 별도로 위탁기간 동안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분양대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입 및 비용 관리
  -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
    - \*지출경비: 인건비, 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경비, 용역비·수리비 등 재산 경비, 위탁 수수료
    - \*위탁수수료: 개발수수료(개발보수, 개발비용(원리금),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 매년 수탁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활용하여 개발비용 상환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8조(위탁사무의 계산)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는 수익을 위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 작성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원경진 (2133-7444)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총39,142백만원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br>(2025) | 2차년도<br>(2026) | 3차년도<br>(2027) | 4차년도<br>(2028) | 5차년도<br>(2029) | 합계         |
|-------------|------------------|----------------|----------------|----------------|----------------|----------------|------------|
| 지출          | ○ 민간위탁금          | 2,535,153      | 7,864,901      | 8,100,849      | 8,343,874      | 8,594,190      | 35,438,967 |
|             | 인건비              | 1,505,206      | 3,269,357      | 3,367,438      | 3,468,461      | 3,572,515      | 15,182,977 |
|             | 운영비              | 377,746        | 1,149,403      | 1,183,885      | 1,219,402      | 1,255,984      | 5,186,420  |
|             | 사업비              | 484,138        | 2,924,752      | 3,012,495      | 3,102,869      | 3,195,955      | 12,720,209 |
|             | 일반관리비 및<br>위탁수수료 | 168,063        | 521,389        | 537,031        | 553,142        | 569,736        | 2,349,361  |
|             | ○ 민간위탁사업비        | 1,940,000      | 30,000         | 30,900         | 31,827         | 32,782         | 2,065,509  |
|             | 도서구매비            | 765,000        | 30,000         | 30,900         | 31,827         | 32,782         | 890,509    |
|             | 자산취득비            | 1,175,000      | 0              | 0              | 0              | 0              | 1,175,000  |
|             | ○ 공기관위탁사업<br>비   | 92,320         | 369,282        | 380,360        | 391,771        | 403,524        | 1,637,257  |
|             | 소계 (a)           | 4,567,473      | 8,264,183      | 8,512,109      | 8,767,472      | 9,030,496      | 39,141,733 |
| 수입          | ○ 프로그램<br>이용료    | 353,190        | 2,099,160      | 2,162,135      | 2,226,999      | 2,293,809      | 9,135,293  |
|             | 체육프로그램           | 128,160        | 512,640        | 528,019        | 543,860        | 560,176        | 2,272,855  |
|             | 문화프로그램           | 62,400         | 499,200        | 514,176        | 529,601        | 545,489        | 2,150,866  |
|             | 연수프로그램           | 162,630        | 1,087,320      | 1,119,940      | 1,153,538      | 1,188,144      | 4,711,572  |
|             | ○ 대관료            | 20,800         | 124,800        | 128,544        | 132,400        | 136,372        | 542,916    |
|             | 소계 (b)           | 373,990        | 2,223,960      | 2,290,679      | 2,359,399      | 2,430,181      | 9,678,209  |
| □ 총 비용(a-b) |                  | 4,193,483      | 6,040,223      | 6,221,430      | 6,408,073      | 6,600,315      | 29,463,524 |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5조)

다. 용어 및 약칭 문구 등 정비(안 제2조, 제4~12조, 제14조~제15조, 별표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7. 18. ~ 8. 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햇님 ☎2133-7538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응급환자”라 함은”을 ““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응급의료”라 함은”을 ““응급의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라 함은”을 ““응급처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을 ““응급의료종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 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구급차”라 함은”을 ““구급차등”이란”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구급차를”을 “구급차등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응급의료사업”을 “법 제13조의6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다중 집합장소”를 “다중집합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시에”를 각각 “시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을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자료”를 “각종 자료”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의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급차 등” 을 각각 “구급차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을 “자는” 으로, “보건복지부령” 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급차 등” 을 “구급차등” 으로, “사유없” 을 “사유 없” 으로, “요청 할” 을 “요청할” 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 응급환자” 를 각각 “중증응급환자”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시” 를 “시”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도감독” 을 “지도·감독”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제1항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가목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뜻은 -----.                                        |
|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응급환자”란 -----<br>-----<br>-----<br>-----<br>-----<br>-----<br>-----. |
|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br>-----<br>-----<br>-----<br>-----<br>-----<br>-----. |
|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                                                                                                            | 3. “응급처치”란 -----<br>-----<br>-----<br>-----                             |

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생략)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9. (생략)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

-----  
-----  
-----  
--.

4. “응급의료종사자”란 -----  
-----  
-----  
-----  
-----.

5. -----이란 -----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

6. “구급차등”이란 -----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

7. (현행과 같음)

8. -----  
구급차등을 -----  
-----.

9.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 업무의 지원

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획의 수립·시행) ① -----  
법 제13조의2제1항-----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 법 제13조의6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구급차등-----  
-----  
-----.

⑤ (생 략)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① ---- 법 제14조제2항  
-----  
-----  
-----.

②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  
-----  
-----  
-----  
-----  
-----  
-----.

1. 시-----  
-----  
----- 다중집합장소 -----  
-----  
-----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3. (생략)

②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재난 발생시 중증외상환자 및 재난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예비병상 및 의료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9조(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략)

제10조(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계획 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

2. 시 -----  
-----

3. (현행과 같음)

② ----- 시에 -----  
-----  
-----  
-----  
-----  
-----  
-----.

③ ----- 시에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발생 시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  
-----

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수집정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  
----- 각종 자료 -----  
-----  
----- 운영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규칙 -----  
-----.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구급차등 -----  
-----  
-----.

④ ----- 구급차등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는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서울시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  
-----  
-----  
-----  
-----.

⑦ ----- 구급차 등-----  
-----  
----- 사유 없-----  
-----  
-----  
-----  
----- 요청 할 -----  
--.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 중증응급환자-----  
-----  
-----  
-----.

② -----  
-----  
----- 중증응급환자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 시 -----  
-----

권역별로 자치구,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  
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지도·감독)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  
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도·  
감독 -----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근거 법률 인용 조문을 삽입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햇님 (☎ 2133-7538)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 위임사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야간약국’ 을 ‘공공심야약국’ 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명시(안 제1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상위법령의 운영시간 범위 내로 변경(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약사법」 제21조의3

(2)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6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8. 22. ~ 9. 1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지현(☎2133-751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야간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운영하는 야간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 야간약국 “(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을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으로, “야간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야간시간 대”를 “심야시간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를 ““심야시간대”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간시간대 및”을 “심야시간대 및”으로, “야간시간대에”를 “심야시간대에”로, “야간약국 운영자”를 “심야약국 운영자”로, “야간약국을”을 “심야약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관리)”를 “(심야약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간약국 근무”를 “심야약국 근무”로, “야간약국의”를 “심야약국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야간약국”을 각각 “심야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u><br/><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u>야간</u><br/><u>시간대</u>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br/>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br/>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br/>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br/>을 방지하기 위하여 <u>운영하는</u><br/><u>야간약국</u>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br/>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br/>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br/>같다.</p> <p>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br/><u>약국</u>“ 이라 한다.)이란 「약사<br/>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br/>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br/>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br/>“이라 한다)에게 평일 <u>야간시</u><br/><u>간대</u>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br/><u>야간시간</u> 내에 의약품과 의약<br/>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br/>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p> | <p><u>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u><br/><u>조례</u></p> <p>제1조(목적) ----- <u>심야</u><br/><u>시간대</u>-----<br/>-----<br/>-----<br/>----- 「약사법」<br/>제21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br/>는 <u>공공심야약국</u>-----.</p> <p>제2조(정의) -----<br/>-----<br/>-----.</p> <p>1. “공공심야약국”(이하 “<u>심야</u><br/><u>약국</u>“이라 한다)-----<br/>-----<br/>-----<br/>----- <u>심야시</u><br/><u>간대</u>-----<br/><u>심야시간대</u>-----<br/>-----<br/>-----</p> |



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

2. “심야시간대”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심야약국-----  
-----  
-----  
----- 노  
력하여야 한다.

② ---- 심야약국-----  
----- 노  
력하여야 -----  
-----.

③ -----  
-----  
-----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 심야시간대 및 ----- 심야시간대에 -----  
-----  
심야약국 운영자-----  
심야약국을 -----.

② -----  
-- 심야약국-----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  
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  
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  
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  
약국 근무 -----  
-----  
----- 심야약국의  
-----  
-----.

② ----- 심야약국-----  
-----.

③ ----- 심야약국-----  
-----  
----- 소관 상임위원회-----  
-----.

제6조(홍보) ----- 심야약국-----  
-----  
-----.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 위임사항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지현 (☎ 2133-7511)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2133-7680)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에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을 “제1항에 따른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 를 “법 제24조”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 를 “제28조” 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 을 “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 을 “간사 1명” 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을 “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 를 “법 제24조의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 을 “제29조제3항”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환경보건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br>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br>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br>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br>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br>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br>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br>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br>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br>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u>환경보<br/>건법</u> 」 및 「 <u>화학물질관리법</u> 」<br>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br><u>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u> -----<br>-----<br>-----<br>-----<br>-----<br>-----<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br>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br>같다.                                                                                                                                                                                 | 제2조(정의) -----<br>----- 뜻은 -----<br>-----.                                                                                                                        |
| 1. “ <u>환경보건</u> ”이란 「 <u>환경보건<br/>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br><u>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br/>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br/>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br/>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br/>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br/>·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 <삭 제>                                                                                                                                                            |
| 2. “ <u>환경성질환</u> ”이란 역학조사<br>(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 <삭 제>                                                                                                                                                            |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삭 제>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삭 제>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삭 제>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  
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  
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  
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  
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  
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  
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  
학물질을 말한다.

<삭 제>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  
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①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  
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

<신 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에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행과 같음)

③ -----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한다.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  
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  
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  
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  
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  
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  
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  
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  
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 ⑧ (생략)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

-----

-----

-----

-----

-----

----- 시의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시의 환경계획 수립

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  
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  
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  
청할 수 있다.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  
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

시 -----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  
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  
-----  
-----  
-----  
-----  
-----  
-----.

⑥ ---- 제1항-----  
----- 「환경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의2-----  
-----  
-----.

⑦ ----- 제1항-----  
-----  
-----  
-----.

⑧ ----- 제  
1항-----  
-----

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

-----

-----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⑨ -----

----- 제1

항-----

-----

-----

-----

-----

-----

-----.

<삭 제>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법 제15조 제1항·제2항-----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

<삭 제>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법 제24조-----  
-----  
-----  
-----  
-----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  
-----  
-----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④ (생략)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 계획-----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  
-----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2. -----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

⑤ -----  
-----  
간사 1명-----  
----- 부  
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

1. ----- 계획-----

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생 략)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

4. ~ 8. (생 략)

② (생 략)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  
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  
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  
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  
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  
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  
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

1. -----  
-----  
-- 법 제24조의3-----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29조제3항-----  
-----  
-----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삭제), 시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금재 (☎ 2133-7680)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정비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나. 위원회 서면심사 구체화 근거 명시 (안 제12조제1항)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 (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2. 8. 11. ~ 9. 2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정재훈(☎ 2133-873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를 “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 로, “자로 한다” 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은 서울특별시” 를 “위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은” 을 “위원:” 으로, “경험” 을 “관한 경험” 으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을 “임명 또는 위촉”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그 직무를 수행” 을 “직무를 수행” 으로,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을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심의 할” 을 “심의·의결할”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단위: 만원)

| 제 재 기 준                                                                                                                                 |            |                                  | 포상금 지급액<br>(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br>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 |
|-----------------------------------------------------------------------------------------------------------------------------------------|------------|----------------------------------|-------------------------------------------|
| 위 반 행 위                                                                                                                                 | 영업<br>정지   | 과징금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 이<br>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br>하도급한 경우<br>-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br>-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8개월<br>6개월 | 1,500 ~ 24,000<br>1,200 ~ 18,000 | 1,680 이내<br>1,260 이내                      |
| ○ 위반행위 근거 조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                                  |                                           |
| ○ 무등록 전문건설업자에게<br>하도급(재하도급 포함)                                                                                                          | 6개월        | 1,200 ~ 18,000                   | 1,260 이내                                  |
| ○ 위반행위 근거 조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                                  |                                           |
|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없이<br>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                                  |                                           |
| ○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br>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4개월        | 800 ~ 12,000                     | 840 이내                                    |
| ○ 위반행위 근거 조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3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                                  |                                           |
|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br>○ 위반행위 근거 조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4개월        | 4,000                            | 280 이내                                    |
|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br>○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br>○ 위반행위 근거 조항<br>-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br>-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br>-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2개월        | 2,000                            | 140 이내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br>-- <u>위원장</u> -----<br>-----<br>--.                                         |
| ② 위원장은 <u>재난안전관리실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해당업무 담당국장</u> 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 로 한다. | ② ----- <u>건설기술정책관이</u><br><u>맡고</u> -----<br>-----<br>----- <u>사람 중에서 시장이</u><br><u>임명 또는 위촉한다.</u> |
| 1. 당연직 <u>위원</u> 은 <u>서울특별시</u>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 1. ----- <u>위원</u> : -----<br>-----<br>-----                                                         |
| 2. 위촉직 <u>위원</u> 은 건설공사 분야에 <u>경험과 학식</u> 이 풍부한 <u>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u>                | 2. ----- <u>위원</u> : -----<br>-- <u>관한 경험</u> -----<br><u>사람</u>                                     |
|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u>위촉</u>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③ -----<br>--- <u>임명 또는 위촉</u> -----<br>-----.                                                       |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u>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br><u>직무를 수행</u> ----- <u>없을 때</u><br><u>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 -<br>-----.                   |
| 제12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 제12조(위원회 심의) ① -----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  
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심의 · 의결할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위 변경 반영 및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로 일부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정재훈 (02-2133-8730)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8. 22. ~ 9. 1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박슬기 (☎ 2133-7014)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공기업법」 제49조”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조원”을 “12조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 「지방공기업법」 제49조-----<br>-----<br>-----<br>-----. |
|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br>② (생략)                                                               | 제5조(자본금) ① -----<br>----- 12조원-----<br>-----<br>-----.                                  |
| 제7조(등기) ① (생략)<br>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7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지방공기업법 시행령」-----<br>-----.             |
| 제16조(이사회) ① ~ ⑤ (생략)<br><br>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                                                               | 제16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br><br>⑥ -----<br>-----<br>-----                               |

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제4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범위-----  
-----  
-----,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  
-----  
-----  
-----  
-----  
----- 범위-----  
-----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시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수권자본금(서울시 출자금) 중 매입임대주택 공급 비용은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하나 국토교통부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신규사업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주택실 주택정책과 박슬기(2133-7014)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설정함(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를 규정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8. 22. ~ 9. 11.)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 제출의견: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요청  
 - 검토결과: 다수의 정비구역과의 연계성 및 광역적 검토를 위해 위임사무를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명노안 (☎ 2133-7218)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

제9조의 제목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맡는다.
- ⑤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구”를

“각 자치구” 로, “관리조례” 를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자율을” 을 “이자률”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을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영 제34조제2항” 을 “영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⑥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서

|            |        |                                                                               |        |            |                 |  |
|------------|--------|-------------------------------------------------------------------------------|--------|------------|-----------------|--|
| 제안자        | 법인명    |                                                                               |        |            |                 |  |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전화: ) |            |                 |  |
| 신 청 역<br>내 | 신청지역   | 대표 위치                                                                         |        |            |                 |  |
|            |        | 예정 사업명<br>(구역명)                                                               |        |            |                 |  |
|            |        | 구역면적                                                                          | (㎡)    |            |                 |  |
|            | 토지등소유자 | 총 소유자수                                                                        | 명      |            |                 |  |
|            |        | 동의자수                                                                          | 명      | 동의율        | %               |  |
| 기 본<br>사 항 | 상위계획   | ○○계획과의 정합성                                                                    |        | 검 토<br>결 과 | 적합 또는 부적합<br>기재 |  |
|            | 구역면적 등 |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등의 적법성<br>(「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등) |        |            | 적합 또는 부적합<br>기재 |  |
|            | 노 후 도  | 노후도 비율의 적합성<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등)                                  |        |            | 적합 또는 부적합<br>기재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름

○○ 구청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br><u>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u><br><u>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u><br><u>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u> |
|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생략)<br><u>&lt;신설&gt;</u> |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u>②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                               |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br><u>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u><br><u>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u>                           |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  
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 위  
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3.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  
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4. 사업협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  
는 사업협회를 담당하는 부  
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  
는 사업협회의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
5.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6. 시장은 사업협회의 구성·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  
정될 때까지 사업협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②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사업협의회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사업협의회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맡는다.

⑤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업협의회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특별

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  
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  
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축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  
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  
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  
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축  
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용 등)

- ① ~ ⑤ (생 략)

<신 설>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 주차장설치제한지  
역으로 보고 -----

2. -----  
-----  
-----  
-- 각 자치구-----  
관리 조례-----  
-----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  
수할 수 있는 기간)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 이자율 -----  
-----.

제20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축

⑥ 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한다.

⑦ 영 제34조제3항-----  
-----  
-----  
--.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재정비촉진사업(정비사업) 추진 관련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인수시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명노안(2133-7218)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제대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함과 더불어 기타 약칭 및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수정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 나. 약칭 추가 및 수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 다. 위원회 분과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9조제10항 및 제11항)
- 라. 예산 범위 지원 내용 명시(안 제14조)
-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용 (☎ 2133-6581)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을 “ “청년” 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및” 을 “ 「청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으로 한다.

제5조 중 “시는” 을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는”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시의” 를 “시의” 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수립시” 를 “수립 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원회” 를 각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장은”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당연직”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위원회” 를 각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분과회의” 를 “분과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과회의의” 를 각각 “분과위원회의”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위원회” 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간사를 둔다” 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위원회 운영”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 를 각각 “시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청년기본법」 제15조” 를 “법 제15조”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 를 “시의” 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 를 “시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격요건”을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 범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청년 시설”을 “청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9세~39세”를 “19세부터 39세”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br>----- 뜻은 -----<br>-----.                                    |
|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1. “청년”이란 -----<br>-----<br>-----.<br>-----.                                 |
| 2. ~ 7. (생략)                                                                                                      | 2. ~ 7. (현행과 같음)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br>-----<br>-----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시는</u>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서울특별시</u> (이하 “시”라 한다)는 -----<br>-----<br>-----<br>-----. |
|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② (생략)                                                                                    |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6.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③ -----  
----- 시의 -----  
-----.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수립 시 -----  
-----.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  
-----.

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  
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 ⑧ (생 략)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  
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  
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  
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  
회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  
-----  
-----  
-----  
-----,

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분  
과위원회-----, 분과위원  
회의 -----  
----- 분과위원회의 -  
-----,

⑪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 4. (생략)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의 -----  
-----  
-----  
-----  
-----.

③ ----- 시의 -----  
----- 법 제15조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④·⑤ (생 략)

⑥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1. ~ 3. (생 략)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범위 -----  
-----.

----- 범위 -----  
-----  
-----.

⑦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의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① ----- 시의 -----  
-----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  
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  
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 4. (생 략)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  
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② (생 략)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  
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  
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  
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범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  
위-----  
-----  
-----  
-----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  
-----  
-----  
-----  
-----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  
-----  
-----  
-----.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범위-----  
-----.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  
-----  
-----  
----- 범위-----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예산 범위-----  
-----  
-----  
-----  
-----  
-----  
-----.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청년시설-----  
-----  
-----  
-----  
-----.

② (생 략)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생 략)

<신 설>

제24조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재산 평정가  
격-----  
--.

④ -----  
-----.

1. ----- 19세부터  
39세-----  
--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 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불필요

### 4. 작성자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용(☎ 2133-6581)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2건으로 취득 18건, 처분 4건임

- 취득 18건은 매입 및 신축 2건, 신축 등 8건, 기부채납 2건, 증축 등 2건, 매입 1건, 신축 취소 1건과 교환 및 신축 2건임
- 처분 4건은 교환처분 2건, 매각 및 멸실 1건과 멸실 1건임

나. 취득 18건

## ○ 매입 및 신축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① 취약계층 재활환자를 위하여 양질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용지(6,964.00㎡)를 매입하고, 서울시 주도의 체계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재활병원(22,803.80㎡)을 건립
- ②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이후 미개발 상태인 부지(10,017.6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도서관·생활체육·키즈카페 등의 공공 문화·체육 복합시설(12,003.50㎡)을 건립

## ○ 신축 등 8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③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52,500.00㎡)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 허브로 조성
- ④ 공원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커뮤니티센터(610.00㎡)를 건립
- ⑤ 서울역 일대 환경개선 및 공간 개조를 위해 광장 내 설치된 기존 노숙인시설을 이전해야 함에 따라, 인근 횡단보도 설치로 폐쇄 예정인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여 이전 신축(940.80㎡)



- ⑥ 영축산 숲속의 집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조건축물로 신축(600.00㎡)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도심 속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조성
- ⑦ 간편식과 고급 음식점으로 양극화된 한강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자본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강 수상에 다양한 음식 제조·판매 부스로 구성된 미식 공간 조성(3,200.00㎡)
- ⑧ 한강경찰대 이촌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치를 재배치하여 여의도본대 센터를 이전 신축(660.00.㎡)하고 계류장(200.00㎡)을 조성
- ⑨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150.00.㎡)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 행사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
- ⑩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및 디자인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명소화하고자 전통시장 2개소(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에 아케이드(7,129.00㎡)를 설치하는 등 서울형 전통시장 혁신 추진
- 기부채납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⑪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중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개발사가 기부채납(토지 122.97㎡ 및 건물 1,328.34㎡)하는 공간으로 서남권 관광·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거점 공간으로 구축
  - ⑫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및 레포츠 운영 공간을 조성하고자 민간 사업시행자가 복합 마리나 시설을 조성(12,850.61㎡)하여 기부채납
- 증축 등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⑬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여 방문객을 위한 식음 및 휴게 공간 등을조성하고자 기존의 노후되고 저이용되는 건축물을 증축(1,964.98㎡) 및 개보수하여 도심 명소로 조성
  - ⑭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자 기존 건물 상부에 전시장 등 1개층(2,500.00㎡)을 증축 하고 공중보행로(19,977.00㎡) 설치
- 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⑮ 사고 선박 예인, 화재 대응 및 수질오염 사고 방제작업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예인선을 대체건조(100톤급, 225㎡)하여 한강 내 복합 수난 사고에 대응



## ○ 신축 취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⑩ 당초 문래동(영등포구 구유지, 문래동3가 55-6)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23,181.90㎡)하고자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영등포구의 위치 변경 요청 등에 따라 문래동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여의도공원으로 건립부지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 교환 및 신축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⑪ 구로세무서가 위치한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부지(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를 구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119.70㎡)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4,441.00㎡)
- ⑫ 당초 홍지동(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민간 소유의 토지(5,177㎡)를 매입 후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4,840㎡)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17년~’ 18년, 3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홍지동→ 신영동, 매입 및 신축 → 교환 및 신축)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신영동 62외 9필지)를 종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970.30㎡)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5,230.86㎡)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다. 처분 4건

## ○ 교환처분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⑬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구로구 고척동 350-2, 3,300.20㎡)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처분
- ⑭ 종로구에서 환경공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종로구 효자동 178-2, 105.50㎡) 및 시유 건물(132.23㎡)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종로구 재동 53-1, 222.80㎡)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하여 처분

## ○ 매각 및 멸실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⑮ 서울 창조타운 조성 사업을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7) 내 건물(29,477.11㎡)을 철거하고 토지(48,000.00㎡)를 매각

## ○ 멸실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⑯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 도심 조성을 위해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량이 미흡한 공중보행로 및 부속 시설물(3,314.41㎡)을 멸실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 취득 18건

- 매입 및 신축 2건 : 토지 16,981.60㎡, 건물 34,807.30㎡
- 신축 등 8건 : 건물 등 65,989.80㎡
- 기부채납 2건 : 토지 122.97㎡, 건물 등 14,178.95㎡
- 증축 등 2건 : 건물 등 24,441.98㎡
- 매입 1건 : 선박 100톤급(225㎡)
- 신축 취소 1건 : 건물 23,181.90㎡
- 교환 및 신축 2건 : 토지 7,090.00㎡, 건물 9,671.86㎡

#### ○ 처분 4건

- 교환 처분 2건 : 토지 3,628.50㎡, 건물 132.23㎡
- 매각 및 멸실 1건 : 토지 48,000.00㎡, 건물 29,477.11㎡
- 멸실 1건 : 공작물 3,314.41㎡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① 취약계층 재활환자를 위하여 양질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용지(6,964.00㎡)를 매입하고, 서울시 주도의 체계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재활병원(22,803.80㎡)을 건립하고,
- ②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이후 미개발 상태인 부지(10,017.6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도서관·생활체육·키즈카페 등의 공공 문화·체육 복합시설(12,003.50㎡)을 건립하고,
- ③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면서 중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52,500.00㎡)을 신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적 허브로 조성하고,
- ④ 공원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610.00㎡)하고,
- ⑤ 서울역 일대 환경개선 및 공간 개조를 위해 광장 내 설치된 기존 노숙인시설을 이전해야 함에 따라, 인근 횡단보도 설치로 폐쇄 예정인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여 이전 신축(940.80㎡)하고,
- ⑥ 영축산 숲속의 집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조건축물로 신축(600.00㎡)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도심 속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하고,

- ⑦ 간편식과 고급 음식점으로 양극화된 한강 먹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자본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강 수상에 다양한 음식 제조·판매 부스로 구성된 미식 공간을 조성(3,200.00㎡)하고,
- ⑧ 한강경찰대 이촌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위치를 재배치하여 여의도본대 센터를 이전 신축(660.00㎡)하고 계류장(200.00㎡)을 조성하며,
- ⑨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150.00㎡)을 설치하고 국경일 기념행사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고,
- ⑩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디자인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명소화하고자 전통시장 2개소(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에 아케이드(7,129.00㎡)를 설치하는 등 서울형 전통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 ⑪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중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개발사가 기부채납(토지 122.97㎡ 및 건물 1,328.34㎡)하는 공간으로 서남권 관광·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고,
- ⑫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및 레포츠 운영 공간을 조성하고자 민간 사업시행자가 복합 마리나 시설을 조성(12,850.61㎡)하여 기부채납하고,
- ⑬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여 방문객을 위한 식음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노후되고 저이용되는 건축물을 증축(1,964.98㎡) 및 개보수하여 도심 명소로 조성하고,
- ⑭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자 기존 건물 상부에 전시장 등 1개층(2,500.00㎡)을 증축하고 공중보행로(19,977.00㎡)를 설치하며,
- ⑮ 사고 선박 예인, 화재 대응 및 수질오염 사고 방제작업 지원 등을 위한 다목적 예인선을 대체건조(100톤급, 225㎡)하여 한강 내 복합 수난 사고에 대응하고,
- ⑯ 당초 문래동(영등포구 구유지, 문래동3가 55-6)에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23,181.90㎡)하고자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영등포구의 위치 변경 요청 등에 따라 문래동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여의도공원

으로 건립부지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며,

- ⑰ 구로세무서가 위치한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부지(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를 구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119.70㎡)하고,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를 신축(4,441.00㎡)하며,
- ⑱ 당초 홍지동(종로구 홍지동 76-1외 5필지) 민간 소유의 토지(5,177㎡)를 매입 후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4,840㎡)하고자 2016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홍지동 부지의 입지 조건이 부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17년~’ 18년, 3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위치와 추진 방식을 변경(홍지동→신영동, 매입 및 신축 → 교환 및 신축)하여, 사업 부지인 종로구 소유의 토지(신영동 62외 9필지)를 종로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3,970.30㎡)하고, 저류시설과 청소년센터의 복합화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건립(5,230.86㎡)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며,
- ⑲ 영등포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가 구로구 내 시유지인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구로구 고척동 350-2, 3,300.20㎡)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구 내 국세청 소유의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하여 처분하고,
- ⑳ 종로구에서 환경공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인 시유지(종로구 효자동 178-2, 105.50㎡) 및 시유 건물(132.23㎡)과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종로구 채동 53-1, 222.80㎡)를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교환하여 처분하고,
- ㉑ 서울 창조타운 조성 사업을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7) 내 건물(29,477.11㎡)을 철거하고 토지(48,000.00㎡)를 매각하고,
- ㉒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 도심 조성을 위해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행량이 미흡한 공중보행로 및 부속시설물(3,314.41㎡)을 멸실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8건

- 매입 및 신축 2건 : 토지 16,981.60㎡, 건물 34,807.30㎡
- 신축 등 8건 : 건물 등 65,989.80㎡

- 기부채납 2건 : 토지 122.97㎡, 건물 등 14,178.95㎡
- 증축 등 2건 : 건물 등 24,441.98㎡
- 매입 1건 : 선박 100톤급(225㎡)
- 신축 취소 1건 : 건물 23,181.90㎡
- 교환 및 신축 2건 : 토지 7,090.00㎡, 건물 9,671.86㎡
- 처분 4건
  - 교환 처분 2건 : 토지 3,628.50㎡, 건물 132.23㎡
  - 매각 및 멸실 1건 : 토지 48,000.00㎡, 건물 29,477.11㎡
  - 멸실 1건 : 공작물 3,314.41㎡

**첨 부**

##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구 분 | 이 전     |        |         | 금 회 |        |            | 합 계 |            |               |
|-----|---------|--------|---------|-----|--------|------------|-----|------------|---------------|
|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 취득  | 계       | 토지     | -       | -   | 1      | 24,194.57  | 1   | 24,194.57  | 118,053,339   |
|     |         | 건물     | -       | -   | 16     | 172,271.79 | 16  | 172,271.79 | 1,424,625,653 |
|     |         | 기타     | -       | -   | 1      | -          | 1   | -          | 9,300,000     |
|     | 매입 및 신축 | 토지     | -       | -   | -      | 16,981.60  | -   | 16,981.60  | 87,366,157    |
|     |         | 건물     | -       | -   | 2      | 34,807.30  | 2   | 34,807.30  | 185,307,000   |
|     | 신축 등    | 건물 등   | -       | -   | 8      | 65,989.80  | 8   | 65,989.80  | 571,996,547   |
|     | 기부채납    | 토지     | -       | -   | 1      | 122.97     | 1   | 122.97     | 1,153,705     |
|     |         | 건물 등   | -       | -   | 1      | 14,178.95  | 1   | 14,178.95  | 76,855,209    |
|     | 증축 등    | 건물 등   | -       | -   | 2      | 24,441.98  | 2   | 24,441.98  | 384,699,041   |
|     | 매입      | 선박     | -       | -   | 1      | -          | 1   | -          | 9,300,000     |
|     | 신축(취소)  | 건물     | -       | -   | 1      | 23,181.90  | 1   | 23,181.90  | 129,787,000   |
|     | 교환 및 신축 | 토지     | -       | -   | -      | 7,090.00   | -   | 7,090.00   | 29,533,477    |
|     |         | 건물     | -       | -   | 2      | 9,671.86   | 2   | 9,671.86   | 75,980,856    |
| 처분  | 계       | 토지     | -       | -   | 2      | 51,628.50  | 2   | 51,628.50  | 293,869,679   |
|     |         | 건물     | -       | -   | 1      | 29,609.34  | 1   | 29,609.34  | 8,724,023     |
|     |         | 공작물    | -       | -   | 1      | 3,314.41   | 1   | 3,314.41   | 3,019,599     |
|     | 교환      | 토지     | -       | -   | 1      | 3,628.50   | 1   | 3,628.50   | 16,957,679    |
|     |         | 건물     | -       | -   | 1      | 132.23     | 1   | 132.23     | 13,896        |
|     | 매각 및 멸실 | 토지     | -       | -   | 1      | 48,000.00  | 1   | 48,000.00  | 276,912,000   |
|     |         | 건물     | -       | -   | -      | 29,477.11  | -   | 29,477.11  | 8,710,127     |
|     | 멸실      | 공작물    | -       | -   | 1      | 3,314.41   | 1   | 3,314.41   | 3,019,599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5년 정기분)

| 인원<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br>(100톤급(225㎡))   | 기준가격(천원)      | 취득<br>시기 | 취득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계        |          |        |        |             |                             |               |          |                               |         |
| 1        | 토지<br>매입 | 영등포구   | 진관동    | 58-26<br>일대 | 196,466.36<br>(100톤급(225㎡)) | 1,551,978,992 |          |                               |         |
|          | 건물<br>신축 |        |        |             | 6,964.00                    | 49,569,752    | 2026     | 공공재활병원 건립                     | 공공의료과   |
| 2        | 토지<br>매입 | 강서구    | 내발산동   | 743         | 22,803.80                   | 123,301,000   | 2028     |                               |         |
|          | 건물<br>신축 |        |        |             | 10,017.60                   | 37,796,405    | 2025     |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 문화시설과   |
| 3        | 건물<br>신축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2           | 52,500.00                   | 490,336,080   | 2029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br>제2세종문화관 건립 | 도시공간전략과 |
| 4        | 건물<br>신축 | 노원구    | 공릉동    | 29-51       | 610.00                      | 3,715,732     | 2026     | 화랑대철도공원<br>커뮤니티센터 건립          | 공원조성과   |
| 5        | 건물<br>신축 | 종로구    | 남대문로5가 | 67-2<br>일대  | 940.80                      | 3,951,200     | 2025     | 서울역다시서기<br>희망가꿈센터 건립          | 지활지원과   |
| 6        | 건물<br>신축 | 노원구    | 월계동    | 534-1 외     | 600.00                      | 4,000,000     | 2026     | 국산복합 목조건축 실연사업                | 자연생태과   |
| 7        | 선박<br>신축 | 서초구    | 반포동    | 647         | 3,200.00                    | 25,000,000    | 2027     | 수상 푸드존 조성                     | 수성공간조성과 |

| 일련<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취득<br>시기 | 취득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8        | 건물<br>신축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86-7       | 660.00    | 8,765,911  | 2026     | 한강경화대 여의도본대<br>이전 및 신축         | 자치경찰지원과      |
|          | 공작물<br>설치   |        |      |            | 200.00    | 165,000    | 2026     |                                |              |
| 9        | 공작물<br>설치   | 종로구    | 세종로  | 1-68       | 150.00    | 10,852,166 | 2025     |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 광화문광장<br>사업과 |
| 10       | 공작물<br>설치   | 중구     | 황학동  | 442<br>일대  | 7,129.00  | 25,210,458 | 2026     |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br>(신용시장, 동인시장) | 상권활성화과       |
|          |             | 종로구    | 동인동  | 10-3<br>일대 |           |            |          |                                |              |
| 11       | 토지<br>기부채납  | 강서구    | 미곡동  | 797        | 122.97    | 1,153,705  | 2025     | 서울 서남권 관광·대이스<br>글로벌센터 기부채납    | 관광정책과        |
|          | 건물<br>기부채납  |        |      |            | 1,328.34  | 1,816,209  |          |                                |              |
| 12       | 공작물<br>기부채납 | 송파구    | 점선동  | 1-2<br>일대  | 12,850.61 | 75,039,000 | 2026     | 잠실 계류장 조성                      | 서울조성과        |
| 13       | 건물<br>증축    | 종로구    | 세종로  | 80-1       | 1,964.98  | 52,442,000 | 2027     |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 광화문광장<br>사업과 |



| 일련<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취득<br>시기 | 취득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14       | 건물 건축<br>등록      | 영신구    | 이촌동   | 302-146<br>일대 | 2,500.00        | 332,257,041 | 2027     | 노들섬 히말라야공원 조성                     | 미래공간담당관 |
|          | 공작물<br>설치        |        |       |               | 19,977.00       |             |          |                                   |         |
| 15       | 선박<br>매입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83-1          | 100톤급<br>(225㎡) | 9,300,000   | 2027     | 친환경 예인선(다목적) 대체 건조                | 수상관리과   |
| 16       | 건물<br>신축<br>(취소) | 영등포구   | 문래동3가 | 55-6          | 23,181.90       | 129,787,000 | -        | 서관권 제2세종문화회관<br>(문래동) 건립 취소       | 문화시설과   |
| 17       | 토지<br>교환         | 영등포구   | 문래동1가 | 23-1          | 3,119.70        | 23,996,732  | 2025     | 서울시 국제창간<br>부지교환 및 시민영등포실버케어센터 건립 | 어르신복지과  |
|          | 건물<br>신축         |        |       |               | 4,441.00        | 22,794,356  | 2028     |                                   |         |
| 18       | 토지<br>교환<br>(변경) | 종로구    | 신영동   | 62<br>일대      | 3,970.30        | 5,536,745   | 2027     | 시민중로청소년센터 복합건립                    | 청소년정책과  |
|          | 건물<br>신축<br>(변경) |        |       |               | 5,230.86        | 53,186,500  | 2029     |                                   |         |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5년 정기분)

| 일련<br>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처분<br>시기 | 처분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계        |           |        |       |          |           |             |          |                      |        |
| 1        | 토지<br>교환  | 구로구    | 고척동   | 350-2    | 84,552.25 | 305,613,301 |          |                      |        |
| 2        | 토지<br>교환  | 종로구    | 제동    | 53-1 외   | 328.30    | 1,743,757   | 2025     | 시립영동포실케어센터 건립        | 이르신복지과 |
|          | 건물<br>교환  | 종로구    | 효자동   | 178-2    | 132.23    | 13,896      | 2027     |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 청소년정책과 |
| 3        | 토지<br>매각  | 은평구    | 북면동   | 7        | 48,000.00 | 276,912,000 | 2025     | 서울혁신파크<br>건물 명실 및 매각 | 서부권사업과 |
|          | 건물<br>명실  |        |       |          | 29,477.11 | 8,710,127   |          |                      |        |
| 4        | 건축물<br>명실 | 중구     | 을지로4가 | 310-68일대 | 3,314.41  | 3,019,599   | 2025     | 세운지구 보행환경개선          | 도시재창조과 |

##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요약(' 25년 정기분)

| 사업명                            | 구분                 | 내역 |    |                     | 세부내용                                                                                                                                                                                                                                                                                                                                                                                         |
|--------------------------------|--------------------|----|----|---------------------|----------------------------------------------------------------------------------------------------------------------------------------------------------------------------------------------------------------------------------------------------------------------------------------------------------------------------------------------------------------------------------------------|
|                                |                    | 종류 | 건수 | (면적(㎡))<br>(연면적(㎡)) |                                                                                                                                                                                                                                                                                                                                                                                              |
| 공공재활영원<br>건립                   | 취득<br>(매입 및<br>신축) | 토지 | 1  | 6,96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취약계층 재활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li> <li>- 대상 지 : 은평구 진관동 58-26 일대(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③-2)</li> <li>- 사업기간 : ' 22. 8월 ~ ' 28. 12월</li> <li>- 소요예산 : 165,701,000천원</li> <li>- 사업규모 : 토지 6,964.00㎡, 건물 22,803.80㎡</li> <li>- 기준가격 명세 : 토지 49,569,752천원, 건물 123,301,000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매입&gt; 수의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                    | 건물 | 1  | 22,803.80           |                                                                                                                                                                                                                                                                                                                                                                                              |
| 서서문문화관자 조성                     | 취득<br>(매입 및<br>신축) | 토지 | 1  | 10,017.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공공도서관·생활체육시설·키즈카페) 조성</li> <li>- 대상 지 : 강서구 내발산동 743</li> <li>- 사업기간 : ' 20. 1월 ~ ' 29. 12월</li> <li>- 소요예산 : 91,590,000천원</li> <li>- 사업규모 : 토지 10,017.60㎡, 건물 12,003.50㎡</li> <li>- 기준가격 명세 : 토지 37,796,405천원, 건물 62,006,000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매입&gt; 협의매입,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                    | 건물 | 1  | 12,003.50           |                                                                                                                                                                                                                                                                                                                                                                                              |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br>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 취득<br>(신축)         | 건물 | 1  | 52,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신축</li> <li>- 대상 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2</li> <li>- 사업기간 : ' 23. 11월 ~ ' 28. 12월</li> <li>- 소요예산 : 490,336,080천원</li> <li>- 사업규모 : 건물 52,500.00㎡</li> <li>- 기준가격 명세 : 건물 490,336,080천원</li> <li>- 계약방법 :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공사), 설계공모(설계)</li> </ul>                                                                            |

| 사업명                  | 구분         | 내역 |    |          | 세부내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br>건립 | 채득<br>(신축) | 건물 | 1  | 610.00   | 기준가격(천원)<br><br>3,715,732<br><br>- 목적 및 용도 : 공원 내 편의시설 보완하여 문화공원 위상 제고 및 이용 만족도 향상<br>- 대 상 지 : 노원구 공릉동 29-51<br>- 사업기간 : '23. 7월 ~' 26. 6월<br>- 소요예산 : 3,715,732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610.00㎡<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3,715,732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
| 서울역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br>건립 | 채득<br>(신축) | 건물 | 1  | 940.80   | 기준가격(천원)<br><br>3,951,200<br><br>- 목적 및 용도 : 서울역 일대 거리노숙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br>- 대 상 지 : 중구 남대문로5가 67-2 일대<br>- 사업기간 : '24. 5월 ~' 25. 12월<br>- 소요예산 : 3,951,200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940.80㎡<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3,951,200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
| 국산목재<br>목조건축실연사업     | 채득<br>(신축) | 건물 | 1  | 600.00   | 기준가격(천원)<br><br>4,000,000<br><br>- 목적 및 용도 : 국산 목재를 활용한 산림복합체험센터 신축<br>- 대 상 지 : 노원구 월계동 534-1 외 1필지<br>- 사업기간 : '23. 6월 ~' 26. 12월<br>- 소요예산 : 4,000,000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600.00㎡<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4,000,000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

| 사업명                 | 구분           | 내역  |    |            | 세부내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수상 푸드조 조성           | 취득<br>(신축)   | 선박  | 1  | 3,200.00   | - 목적 및 용도 : 다양한 미식공간 조성하여 다양성 확보,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br>- 대상지 : 서초구 반포동 647(반포한강공원)<br>- 사업기간 : '23. 10월 ~ '27. 12월<br>- 소요예산 : 25,000,000천원<br>- 사업규모 : 선박 3,200.00㎡<br>- 기준가격 명세 : 선박 25,000,000천원<br>- 계약방법 : <선박 신축> 공개경쟁입찰               |
|                     |              |     |    | 25,000,000 |                                                                                                                                                                                                                                          |
| 한강경철대 여의도본대 이전 및 신축 | 취득<br>(신축 등) | 건물  | 1  | 660.00     | - 목적 및 용도 : 한강경철대 근무환경 개선 및 한강 상 시민 안전망 확보<br>- 대상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br>- 사업기간 : '23. 12월 ~ '26. 6월<br>- 소요예산 : 8,930,911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660.00㎡, 계류장 200.00㎡<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8,765,991천원, 계류장 165,000천원<br>- 계약방법 : <건물 등 신축> 제형쟁입찰 |
|                     |              | 공작물 | 1  | 200.00     |                                                                                                                                                                                                                                          |
|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 취득<br>(설치)   | 공작물 | 2  | 150.00     | - 목적 및 용도 : 대한민국 상징 조형물 설치로 국가정체성 표출하는 명소 조성<br>- 대상지 : 종로구 세종로 1-68<br>- 사업기간 : '24. 4월 ~ '26. 9월<br>- 소요예산 : 10,852,166천원<br>- 사업규모 : 공작물 150.00㎡<br>- 기준가격 명세 : 10,852,166천원<br>- 계약방법 : <공작물 설치> 공개경쟁입찰                              |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br>조성 사업                                                                                                                                                                                                              | 취 득<br>(설치)       | 공작물                                                                                                                                                                                                                                                                | 2  | 7,129.00  | 25,210,458 |
|                                                                                                                                                                                                                                   |                   | - 목적 및 용도 : 혁신적 디자인의 아케이드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br>- 대 상 지 : (신중암시장) 중구 회현동 442 일대<br>(통인시장) 종로구 통인동 10-3 일대<br>- 사업기간 : 23. 9월 ~ 26. 12월<br>- 소요예산 : 25,210,458천원<br>- 사업규모 : 공작물 7,129.00㎡<br>- 기준가격 명세 : 공작물 25,210,458천원<br>- 계약방법 : <공작물 설치> 공개경쟁입찰(공사), 현상공모(설계) |    |           |            |
| 서울 서남권 관광·마이스<br>글로벌 센터<br>기부채납                                                                                                                                                                                                   | 취 득<br>(기부<br>채납) | 토지                                                                                                                                                                                                                                                                 | 1  | 122.97    | 1,153,705  |
|                                                                                                                                                                                                                                   |                   | 건물                                                                                                                                                                                                                                                                 | 1  | 1,328.34  | 1,816,209  |
| - 목적 및 용도 : 서남권 관광·마이스 비즈니스 관광 수요 창출 거점 구축<br>- 대 상 지 : 강서구 마곡동 767 ((CP1) D동 7층)<br>- 사업기간 : 24. 9월 ~ 26. 7월<br>- 소요예산 : 비예산<br>- 사업규모 : 토지 122.97㎡, 건물 1,328.34㎡<br>-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153,705천원, 건물 1,816,209천원<br>- 계약방법 : 기부채납 |                   |                                                                                                                                                                                                                                                                    |    |           |            |
| 점심 계류장<br>조성                                                                                                                                                                                                                      | 취 득<br>(기부<br>채납) | 공작물                                                                                                                                                                                                                                                                | 1  | 12,850.61 | 75,039,000 |
| - 목적 및 용도 : 한강 내 계류장 및 복합 마리나시설 기부채납으로 취득<br>- 대 상 지 : 송파구 잠실동 1-2 일대<br>- 사업기간 : 24. 4월 ~ 26. 12월<br>- 소요예산 : 비예산<br>- 사업규모 : 공작물 12,850.61㎡<br>- 기준가격 명세 : 공작물 75,039,000천원<br>- 계약방법 : 기부채납                                    |                   |                                                                                                                                                                                                                                                                    |    |           |            |

| 사업명                 | 구분           | 내역  |    |                 | 세부내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세종로공원<br>정합정비       | 취득<br>(건축)   | 건물  | 1  | 1,964.98        | - 목적 및 용도 : 문화관광 방문객 편의증진 및 식음공간 조성<br>- 대상지 : 종로구 세종로 80-1 일대<br>- 사업기간 : '22. 7월 ~ '27. 5월<br>- 소요예산 : 52,442,000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1,964.98㎡<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52,442,000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중축> 공개경쟁입찰(공사), 설계공모(설계)                                            |
|                     |              |     |    |                 |                                                                                                                                                                                                                                                                  |
| 노들섬 하늘예술공원 조성<br>사업 | 취득<br>(건축 등) | 건물  | 1  | 2,500.00        | - 목적 및 용도 : 노들섬을 문화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공중보행로 등 조성<br>- 대상지 : 용산구 이촌동 302-146 일대(노들섬 상당부)<br>- 사업기간 : '23. 10월 ~ '28. 3월<br>- 소요예산 : 332,257,041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2,500.00㎡, 공작물 19,977.00㎡<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등 332,257,041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중축 등> 공개경쟁입찰(공사), 국제지명공모(설계) |
|                     |              | 공작물 | 1  | 19,977.00       |                                                                                                                                                                                                                                                                  |
| 친환경 예인선 대체건조        | 취득<br>(매입)   | 선박  | 1척 | 100톤급<br>(225㎡) | - 목적 및 용도 : 다목적 예인선 대체건조하여 한강 복합 수난사고 대응<br>- 대상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83-1(정박구역, 여의도 관공선전장)<br>- 사업기간 : '24. 8월 ~ '27. 6월<br>- 소요예산 : 9,300,000천원<br>- 사업규모 : 선박 100톤급(225㎡)<br>- 기준가격 명세 : 선박 9,300,000천원<br>- 계약방법 : <선박매입> 공개경쟁입찰                                     |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br>건립 취소                    | 취 득<br>(신축 취소)     | 건물  | 1  | 23,181.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제2세종문화회관(문래동) 건립 취소</li> <li>- 대 상 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li> <li>- 사업기간 : '19. 12월 ~ '28.</li> <li>- 소요예산 : 129,787,000천원</li> <li>- 사업규모 : 건물 23,181.90㎡</li> <li>- 기준가격 명세 : 건물 129,787,000천원</li> <li>- 계약방법 : &lt;건물신축-취소&gt;</li> </ul>                                                                                                                                                        |
|                                          |                    | 토지  | 1  | 3,119.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교환 및 실버케어센터 건립</li> <li>- 대 상 지 : (취득)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 (처분) 구로구 고척동 350-2</li> <li>- 사업기간 : '23. 6월 ~ '28. 6월</li> <li>- 소요예산 : 46,791,088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119.70㎡, 건물 4,441.00㎡<br/>(처분) 토지 3,300.20㎡</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23,996,732천원, 건물 22,794,356천원<br/>(처분) 토지 15,213,922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서울시·국제청 간 부지 교환<br>및 시립영등포<br>실버케어 센터 건립 | 취 득<br>(교환)        | 토지  | 1  | 3,30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                    | 건물  | 1  | 5,230.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시립종로청소년센터<br>복합 건립                       | 취 득<br>법 정<br>(교환) | 토지  | 10 | 3,970.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                    | 건물  | 1  | 5,230.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시립종로청소년센터<br>복합 건립                       | 처 분<br>(교환)        | 토지  | 2  | 328.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                    | 건물  | 1  | 5,230.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및 용도 :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li> <li>- 대 상 지 :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li> <li>- 사업기간 : '19. 6월 ~ '29. 6월</li> <li>- 소요예산 : 66,656,500천원</li> <li>- 사업규모 : (취득) 토지 3,970.30㎡, 건물 5,230.86㎡<br/>(처분) 토지 328.30㎡, 건물 132.23㎡</li> <li>-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5,536,745천원, 건물 53,186,500천원<br/>(처분) 토지 1,743,767천원, 건물 13,896천원</li> <li>- 계약방법 : &lt;토지교환&gt; 협의(감정평가), &lt;건물신축&gt; 공개경쟁입찰</li> </ul>       |



| 사업명              | 구분              | 내역  |    |           | 세부내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                  |                 | 건물  | 1  | 132.23    | 13,896      |
| 서울신파크 건물 명실 및 매각 | 처분<br>(매각 및 명실) | 토지  | 3  | 48,000.00 | 276,912,000 |
|                  |                 | 건물  | 7  | 29,477.11 | 8,710,127   |
|                  |                 | 공작물 | 1  | 3,314.41  | 3,019,599   |
| 세운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 처분<br>(명실)      |     |    |           |             |

- 목적 및 용도 : 서울창조타운(구, 혁신파크) 조성부지에 대해 명실 및 매각하여 입자리 기업 위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대상지 : 은평구 녹번동 7 일대

- 사업기간 : '24. 8월 ~ '25. 6월

- 소요예산 : 7,484,460천원

- 사업규모 : 토지 48,000.00㎡, 건물 29,477.11㎡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276,912,000천원, 건물 8,710,127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각> 공개경쟁입찰, <건물명실> 공개경쟁입찰

- 목적 및 용도 : 종로~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삼풍상가 및 PLS호텔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안전성과 보행성이 미흡한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 대상지 : 종구 을지로4가 310~68 일대

- 사업기간 : '24. 8월 ~ '25. 7월

- 소요예산 : 2,232,597천원

- 사업규모 : 공작물 3,314.41㎡

- 기준가격 명세 : 공작물 3,019,599천원

- 계약방법 : <공작물 명실> 공개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나. 2024.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서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sup>2</sup>,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부지면적 : 97,684m<sup>2</sup>(대지 : 43,241m<sup>2</sup>, 임야 : 54,443m<sup>2</sup>)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5. 1.1. ~ 2027.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275,507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25년 예산편성)

○ 산출근거 :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4. 9.2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 구내식당 · 매점 · 카페 · 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 · 체력단련실 · 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 연수원 · 콘도 등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 그 간의 위탁경과 >

○ 서천연수원 개원 : ' 07. 6. 26

○ 최초위탁(1차) : ' 07.6.1~' 10.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 10.6.1~' 13.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 13.6.1~' 16.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 17.7.1~' 18.12.31(수탁업체 : (주)HTC) : 수의계약

※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 재 위 탁(5차) : ' 19.1.1~' 21.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재 위 탁(6차) : ' 22.1.1~' 24.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상배 (☎ 2133-5783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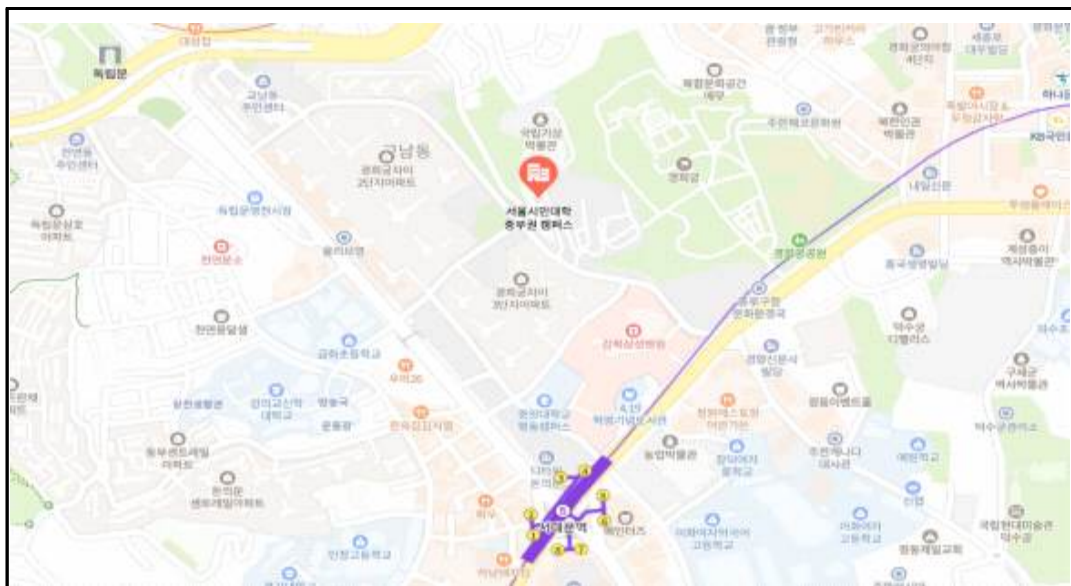
- 위치도



지역 여건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도보 5분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 '18년 3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중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1,485㎡(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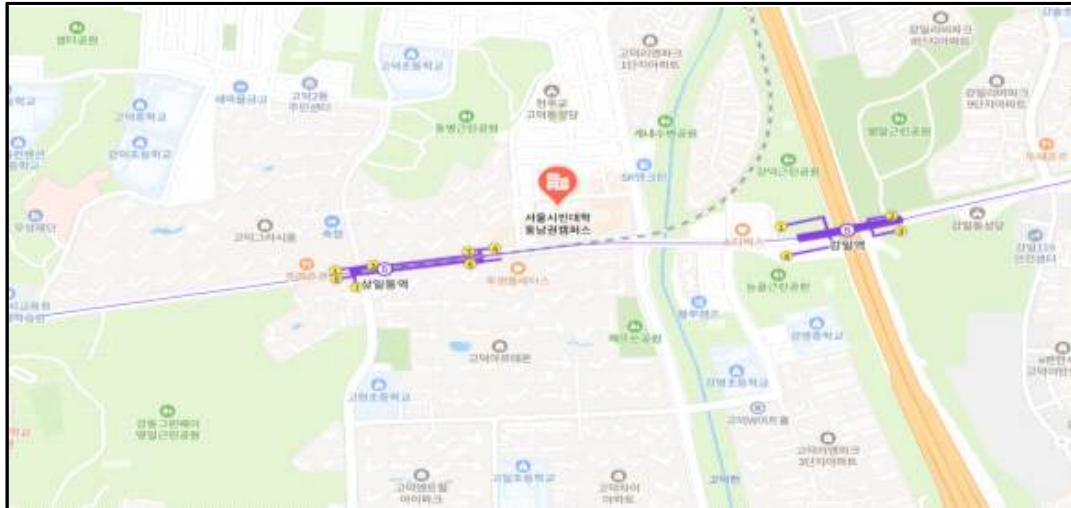


지역 여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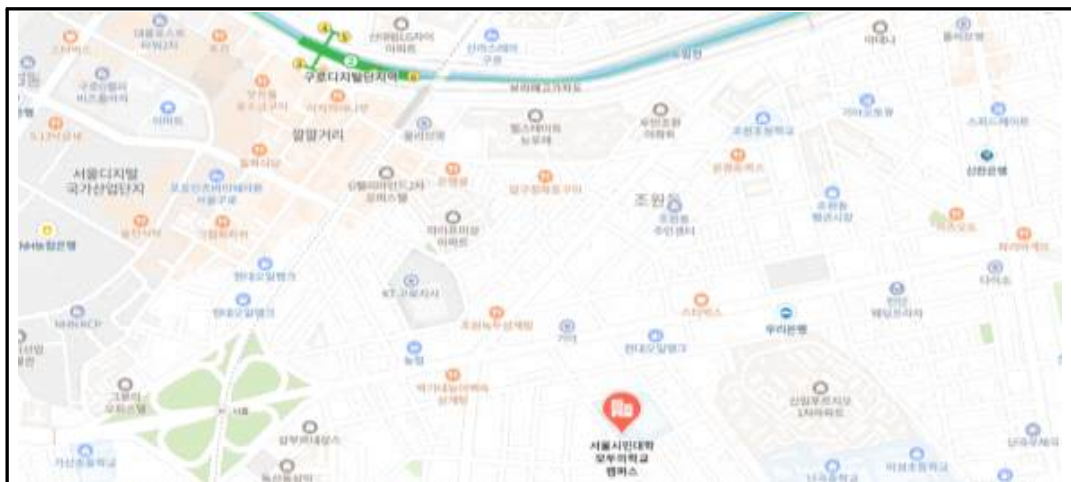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21년 4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시설규모
    - 지상 7,211㎡(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지하 4,600㎡(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위치도



지역 여건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도보 3분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 17년 10월 개관)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시설규모 : 2,462.91㎡(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위치도



지역여건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16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성준 (☎ 2133-3966)

붙임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                         | 2025년 예산(안)       |
|-----------------------------------|-------------------------|-------------------|
| <b>합 계</b>                        |                         | <b>11,610,842</b> |
| <b>고유사업비 소계</b>                   |                         | <b>4,982,750</b>  |
| <b>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b>         |                         | <b>614,760</b>    |
|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 507,110           |
|                                   |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107,650           |
| <b>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b>       |                         | <b>383,100</b>    |
|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 180,360           |
|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 202,740           |
| <b>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b> |                         | <b>223,041</b>    |
|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 18,250            |
|                                   |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사업 | 34,100            |
|                                   |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 147,375           |
|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23,316            |
| <b>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b>           |                         | <b>618,135</b>    |
|                                   | 중부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97,580           |
|                                   |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87,500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41,690           |
|                                   |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91,365            |
| <b>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b>            |                         | <b>866,724</b>    |
|                                   |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58,050            |
|                                   |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162,100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83,790            |
|                                   |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 91,159            |
|                                   | 7학년 교실 운영               | 471,625           |
| <b>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b>         |                         | <b>403,085</b>    |
|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 180,665           |
|                                   |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 40,635            |
|                                   |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 26,255            |
|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155,530           |
| <b>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b>          |                         | <b>635,651</b>    |
|                                   |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88,840           |
|                                   | 동남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337,836           |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08,975           |
| <b>8.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b> |                         | <b>1,238,254</b>  |
|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47,900           |
|                                   |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276,780           |
|                                   |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 6,500             |
|                                   |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 93,000            |
|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 714,074           |
| <b>일반관리비 소계</b>                   |                         | <b>6,001,546</b>  |
|                                   | 인건비                     | 4,132,675         |
|                                   | 운영경비                    | 1,868,871         |
| <b>예비비 소계</b>                     |                         | <b>626,546</b>    |
|                                   | 정-현원차 예비비               | 27,346            |
|                                   | 예비비(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 599,200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 출자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저성장과 고금리 등 금융환경의 악화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소셜벤처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위축되고 있음

나. 서울시는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사회적경제·소셜벤처 기업 등을 선별·육성하고 민간의 금융투자를 유도하는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 나. 출자방향

- 공익성(중소기업 성장 유도)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정부자금(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 육성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다.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 마. 출자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은 공공을 대신하여 돌봄,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조합 결성·출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소셜벤처 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함

<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조합 운영 성과 >

- ▶ 고용노동부 투자조합('11년~'22년, 468억)은 61개 기업에 투자한 결과 매출액 4.3배(2,404억원 → 1조2,671억원), 고용 2,515명(1,189명 → 3,704명) 증가<sup>1)</sup>
- ▶ 서울시 투자조합('18년~'23년, 595억)은 57개 기업에 투자한 결과 매출액 2.6배(83,049억원 → 289,921억원), 고용 1천여명(1,618명 → 2,631명) 증가

－ 벤처투자 시장은 '21년 이후 신규 출자액(조합)이 큰폭으로 감소 했으며, 연간 투자 집행 규모의 감소로 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 가중<sup>2)</sup>

▶ 신규 출자액(조합) : '21년 9.5조원(404개) → '23년 6.5조원(290개), △3조원(114개)

▶ 투자 집행액(기업) : '21년 7.6조원(2,438개) → '23년 5.3조원(2,281개), △2.3조원(157개)

－ 특히,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후기단계 기업으로 자금공급 쏠림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함<sup>3)</sup>

▶ 초기기업 신규투자 비중 : '19년 32%(1.4조원) → '23년 24%(1.3조원)

▶ 후기기업 신규투자 비중 : '19년 26%(1.1조원) → '23년 37%(2.0조원)

### 3. 투자조합 출자 계획

#### 가. 추진방향

-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위해 보조금 축소하고 간접지원 전환
- －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
- －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성장 기업을 우선 지원
  - ▶ 초기기업 지원 : 약자동행 엔젤펀드 60억
  - ▶ 성장기업 지원 : 약자동행 스케일업 펀드 200억

#### 나. '25년 펀드 출자 계획안

- － 펀드명 :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가칭)
- － 결성목표(市 출자액) : 260억원 내외(최대 60억원)

| 분 야         | 결성목표액   | 市 출자액 | 주요사항                                                                                           |
|-------------|---------|-------|------------------------------------------------------------------------------------------------|
| 약자동행 엔젤펀드   | 60억 내외  | 40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기업</li> <li>-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기업</li> </ul> |
| 약자동행 스케일업펀드 | 200억 내외 | 20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기업</li> <li>- 창업 7년 이내 기업</li> </ul>                |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023.3월 언론보도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2024년)

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3년 4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 자금구성 : 시 출자금 + 운용사(GP) + 기타 자금 등
-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 출자조건 : 투자대상\*에 부합하는 기업에 시 출자금의 일정 배수 (엔젤펀드 100%, 스케일업펀드 200%) 이상을 투자
- \*투자대상 : 서울시소재 &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 & 창업 7년 이내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중소기업기금(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에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지관우(☎ 2133-5485) 추창완(☎ 2133-5490)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으나,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000백만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금번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24.9.13.)의 추가 대책 마련 및 노후 열수송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자 변경개요

- 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24,000백만원 출자
  - (기준) 20,000백만원 → (변경) 24,000백만원
  - ※ 제326회 임시회 20,000백만원 출자 동의 완료

(단위 : 억원)

| 사업명          |      | 소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 당초계획 | 659 | 59   | 200  | 140  | 200  | 60   |
|              | 변경계획 | 699 | 59   | 200  | 140  | 240  | 60   |

## 나. 출자 변경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특히, 목동 공동구 노후 배관은 '87년에 준공된 대형 열수송관으로 사고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체계 개선 시급
-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을 변경하여 출자하고자 함
  - '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 214억 ※ 제326회 임시회 출자 동의 200억
  -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 26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나. 예산조치 : ' 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보영 (☎ 2133-3554)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로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위기 십대여성들의 조기발견,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등을 통해 초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초기개입 및 일시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 주요시설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7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긴급 일시보호,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위기 상담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등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시설로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초기개입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

##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5. 5. 1. ~ 2028. 4. 30.)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 규 모 : 대지 15,067㎡, 건축면적 5,841㎡(지상 1층 ~ 4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3명, 취·창업팀 4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548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642백만원, 운영비 543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296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사업비 18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9. 26. 통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박부경(☎ 2133-5333)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5. 5. 1. ~ 2028. 4. 30.)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 규 모 : 대지 4,959㎡, 건축면적 4,910㎡(지상 1층 ~ 4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3명, 취·창업팀 4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503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649백만원, 운영비 557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87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사업비 6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9. 26. 통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박부경 (☎ 2133-5333)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료연계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회의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기 관 명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재건축사업)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
- 사용면적 : 지상 3~4층(1,130㎡), 기부채납시설 활용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관리 · 운영
  - 아동 정서·심리·적성 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사업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5.3.1.~2028.2.28.)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 '25년 소요예산(안) : 1,950백만원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 추진 필요성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초등학생 대상 마음진단·적성 검사 및 대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아동 심리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 24.9.26)
-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 24.10.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이영신(☎ 2133-5168)

## 서울특별시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현재 사회적 인간관계 단절·고립의 심화, 저출생, 가족해체,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심화되고 있고, 가족간 유대감 약화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가족가치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임.
- 나. (가칭)서울가족이야기관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한 옛날 가족사진 등의 자료와 개개인이 보유한 이야기를 수집·가공후 시민들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 다. 가족사업의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여 서울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7-26 (시유지)
- 규모 : 대지 968.9㎡ / 연면적 763㎡(지하3/지상2층)
  - A동(지하1·지상1, 총 376㎡), B동(지하3·지상2, 총 387㎡)
  - ※ 근린공원(1,303.8㎡), 비우당(28.8㎡), 임야(670.98㎡) 사용 예정
- 공간구성(안)

| 구분                 |        | 공간 기능                           | 비고             |
|--------------------|--------|---------------------------------|----------------|
| 본관(A)<br>(376.05㎡) | 가족책방   | · 가족·인문 도서 등 열람                 | 지하 2층<br>지하 3층 |
|                    | 전시     | · 가족 앨범·글귀 갤러리형 전시              |                |
|                    | 가족소통공간 | · 장난감 놀이공간, 가족 영상시청 및 이야기공간     |                |
| 별관(B)<br>(386.95㎡) | 행정공간   | · 행정사무 공간                       | 지상 2층          |
|                    | 스튜디오존  | · 가족 기록물(사진, 영상) 변환, 사진·영상 스튜디오 |                |
| 외부                 | 비우당 공터 | · 시민 휴식공간                       | 지상             |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가족이야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서울가족이야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가족기록 수집 · 보존 · 관리 · 활용 등
- 서울가족이야기관의 시설 및 물품 유지 · 관리
- 서울가족이야기 홈페이지 구축
- 서울가족이야기관 전시 · 행사 및 문화 · 체험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서울가족이야기관 도서 확보 (구입, 기증) 및 관리, 열람서비스 등
- 지역활성화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가족역사 및 가족친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2025. 3. ~ 2028. 2.)

○ 조직 : 관장 1명(운영총괄) / 직원 3명 (선임 1, 실무 2), 총 4명

○ 예산 : 612 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련사업 및 유사분야 수행경험(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의 제2항 제8호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및 동 조례 제46조(사무의 위탁) 제1항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가족담당관 가족안심팀 허광수 (☎ 2133-6567)

##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의 경우 에이즈 신규 감염인 발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근거하여 전문위탁기관을 활용한 일반인 및 성 취약계층(성소수자, 동성애 등)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 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24.12.31.까지) 및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이즈 예방 홍보 및 홍보사업 통합 운영)」를 반영하여 기존 민간위탁 2개 사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3호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후, 제4조의 3(의회 동의 및 보고) ①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 나. 위탁목적: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이즈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전파 차단코자 함
- 다. 위탁기간 : 2025.4.1. ~ 2027.12.31.(2년 9개월)
- 라. 운영기관 : 민간위탁기관 1개소(신규 공개모집)
- 마. 위탁내용 :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무 통합 추진

| 구분       | 2024년(분리 운영)                                             | 2025년(통합 운영)                                                                      |
|----------|----------------------------------------------------------|-----------------------------------------------------------------------------------|
| 교육<br>사업 | 일반인 대상 교육<br>감염위험 집단별 교육<br>보건관계자 교육<br>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 <b>[에이즈 예방 교육 사업]</b><br>일반인 대상 교육<br>감염위험 집단별 교육<br>보건관계자 교육<br>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
| 홍보<br>사업 | 대중매체 이용 홍보<br>감염취약계층 대상 홍보<br>에이즈 예방 캠페인<br>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 <b>[에이즈 예방 홍보 사업]</b><br>대중매체 이용 홍보<br>감염취약계층 대상 홍보<br>에이즈 예방 캠페인<br>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

바. 민간위탁 필요성

-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의 주 대상자인 성 취약계층(성 소수자, 동성애 등)의 경우 일반 경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병 전문지식 및 접근을 위한 교육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특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임
-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에이즈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전파을 사전에 차단함

사. 소요예산 : 179,283천원(전액 시비) ※ 조정안 반영

- 기존민간위탁(2개소) : 68,945천원(연장 3개월분)
- ※ 신규 민간위탁 시작(`25. 4월)까지 3개월 공백 해소를 위한 90일 연장
- 신규민간위탁(1개소) : 110,338천원(신규 9개월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제327회 정례회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향후일정

- 제326회 시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4년 11~12월
- 비용 심사 및 대상자 신규 공모 : `24년 12월~`25년 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5년 1~2월
- 민간위탁 협약심사 및 협약 체결 : `25년 2~3월
- 민간위탁 사업추진 : `25년 4월

붙임 :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2개 사무) 각 1부. 끝.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정주연 (☎02-2133-7684)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40,600백만원 기금 확보 예상 시점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됨  
 -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협약에 따른 기금 납부 시점(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로 변경  
 나. 기금 확보 시점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0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
| 계    | 40,600 | 0   |         |
| 기타수입 | 40,600 | 0   | △40,600 |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      |
|-----|--------|-----|---------|
| 계   | 40,600 | 0   |         |
| 예치금 | 40,600 | 0   | △40,600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안아영 (☎ 2133-832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자연공원구역-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 안건내용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계   |           | 69,008,975.0 |                | 69,008,975.0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11,883,610.0 | 감) 4,783,970.5 | 7,099,639.5  | 10.3%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811,405.2 | 감) 4,724,470.6 | 7,086,934.6  | 10.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8,535.1     | 감) 36,344.1    | 12,190.9     | 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669.7     | 감) 23,155.7    | 514.0        | 0.0%   |    |
| 상업지역 | 소계        | 67.2         | 감) 67.2        | 0.0          | 0.0%   |    |
|      | 일반상업지역    | 67.2         | 감) 67.2        | 0.0          | 0.0%   |    |
| 공업지역 | 소계        | 21,210.0     | 감) 165.6       | 21,044.4     | 0.0%   |    |
|      | 준공업지역     | 21,210.0     | 감) 165.6       | 21,044.4     | 0.0%   |    |
| 녹지지역 | 소계        | 57,104,087.8 | 증) 4,784,203.3 | 61,888,291.1 | 89.7%  |    |
|      | 보전녹지지역    | 1,843.4      | -              | 1,843.4      | 0.0%   |    |
|      | 자연녹지지역    | 57,102,244.4 | 증) 4,784,203.3 | 61,886,447.7 | 89.7%  |    |

※ 금회 경계조정으로 변경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국·공유지)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함

##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

| 구 분                      | 위 치                         | 면적(㎡)        |              |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br>외 38개소구역 | 성북구 성북동 산25-1일대<br>외 38개소구역 | 69,297,374.0 | 감) 288,399.0 | 69,008.975.0 | 증)29,537.6㎡<br>감)317,936.6㎡ |

## 3. 입안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과 국토 계획법 상 용도지역이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가. 용도지역 :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나. 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5. 주민 의견청취

- 가. 열람기간 : 2024.10.4.(금)~10.18(금)  
나. 게재신문 :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다. 열람장소 : 서울시 시설계획과, 각 구청 공원녹지과,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 6. 환경성 검토

- 본 안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함

## 7. 기 타

- 가. 재원조달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등 시민 이용 토지(공원간 연결토지) 단계적 협의매수
  - '30년까지 공원간 연결토지 등 중점 매수 추진 시 2조1,354억원 소요

(단위:억원)

| 구 분  | 합 계    | ' 24년 | ' 25년 | ' 26년 | ' 27년 | ' 28년 | ' 29년 | ' 30년 |
|------|--------|-------|-------|-------|-------|-------|-------|-------|
| 소요예산 | 21,354 | 403   | 650   | 3,820 | 3,824 | 4,219 | 4,219 | 4,219 |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나. 추진경위

- ' 22.04.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착수
- ' 23.10.~12. : 외부전문가 TF팀 구성 및 자문회의(총8회)
- ' 23.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 24.04. : 25개 자치구 협의

| 일 시 | 4/2 (화) | 4/3 (수)    | 4/15(월)                | 4/17(수)     | 4/18(목) |
|-----|---------|------------|------------------------|-------------|---------|
| 자치구 | 서초, 강남  | 동대문, 성북    | 중부공원여가센터<br>중랑, 강서, 양천 | 성동, 영등포, 금천 | 종로, 은평  |
|     | 강동, 송파  | 강북, 노원, 도봉 | 중구, 용산, 광진             | 구로, 동작, 관악  | 서대문, 마포 |

- ' 24.05. :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지역 변경 용역 착수
- ' 24.0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추진 방침

## ※ 작성자

- 용도지역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김정은 (☎2133-8408)
- 용도구역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장수련 (☎2133-8457)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끝.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 성균관대학교 -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구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학 교 | 대학<br>(성균관대학교) | 합 계     |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  | 131,690.20 | -   | 131,690.20 | 건설부고시 제205호 (1985.5.7) | -    |
|     |                | 본교 캠퍼스  |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  | 127,383.80 | -   | 127,383.80 |                        | 변경없음 |
|     |                | 양현관 캠퍼스 | 종로구 명륜동3가 1-1177일대 | 2,452.80   | -   | 2,452.80   |                        | 변경없음 |
|     |                | 기숙사 캠퍼스 | 종로구 명륜동3가 61-23일대  | 1,853.60   | -   | 1,853.60   |                        | 변경없음 |

나.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 구 분        | 구 역 |            |            |            | 번호         | 면 적 (㎡)     |             |            | 비 고        |
|------------|-----|------------|------------|------------|------------|-------------|-------------|------------|------------|
|            | 기 정 |            | 변 경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본교<br>캠퍼스  | 관리  | 일반관리<br>구역 | 관리         | 일반관리<br>구역 | ①          | 31,507.00   | -           | 31,507.00  | 변경없음       |
|            |     |            |            |            | ②          | 24,773.50   | 감) 4,196.00 | 20,577.50  | 선형,면적변경    |
|            |     |            |            |            | ③          | 9,466.00    | -           | 9,466.00   | 변경없음       |
|            |     |            |            |            | ④          | 2,456.80    | -           | 2,456.80   | 변경없음       |
|            | 유지  | 상징경관<br>구역 | 혁신성장<br>구역 | ⑤          | 4,259.00   | 증) 4,196.00 | 8,455.00    | 선형,면적,구역변경 |            |
|            |     |            |            | 일반관리<br>구역 | ⑥          | 6,665.00    | -           | 6,665.00   | 구역변경       |
|            |     |            |            |            | 외부활동<br>구역 | 유지          | 외부활동<br>구역  | ⑦          | 7,614.00   |
|            | 보존  | 녹지보존<br>구역 | 보존         | 녹지보존<br>구역 |            |             |             | ⑧          | 32,323.50  |
|            | 소 계 |            |            |            |            |             | 119,064.80  | -          | 119,064.80 |
| 양현관<br>캠퍼스 | 관리  | 일반관리<br>구역 | 관리         | 일반관리<br>구역 | ①          | 2,452.80    | -           | 2,452.80   | 변경없음       |

| 구 분        | 구 역 |            |     |            |   | 번호         | 면 적 (㎡)  |            |          | 비 고 |
|------------|-----|------------|-----|------------|---|------------|----------|------------|----------|-----|
|            | 기 정 |            | 변 경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소 계 |            |     |            |   |            | 2,452.80 | -          | 2,452.80 |     |
| 기숙사<br>캠퍼스 | 관리  | 일반관리구<br>역 | 관리  | 일반관리<br>구역 | ① | 1,853.60   | -        | 1,853.60   | 변경없음     |     |
|            | 소 계 |            |     |            |   | 1,853.60   | -        | 1,853.60   |          |     |
| 계          |     |            |     |            |   | 123,371.20 | -        | 123,371.20 |          |     |

※ 본교캠퍼스 ⑧구역 녹지보존구역 내 공원 중복결정 면적(8,319.0㎡) 제외

## 2) 밀도계획 (건폐율)

| 구분         |                       | 밀도산정<br>기준면적(㎡) | 조 례<br>건폐율(%) | 사용 건폐율(%) |       | 관리 건폐율(%)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본교<br>캠퍼스  | 제1종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112,370.40      | 30.00         | 22.13     | 27.67 | 25.00     | 30.00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237.60        | 60.00         | 19.73     | 27.12 | 25.00     | 34.34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56.80        | 60.00         | 31.96     | 31.96 | 32.00     | 32.00 |    |
|            | 자연녹지지역                | 8,319.00        | -             | -         | -     | -         | -     |    |
|            | 소계                    | 119,064.80      | 31.69         | 22.24     | 27.74 | 25.14     | 30.20 |    |
| 양현관<br>캠퍼스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52.80        | 60.00         | 56.83     | 56.83 | 60.00     | 60.00 |    |
|            | 소계                    | 2,452.80        | 60.00         | 56.83     | 56.83 | 60.00     | 60.00 |    |
| 기숙사<br>캠퍼스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53.60        | 60.00         | 32.15     | 32.15 | 35.00     | 35.00 |    |
|            | 소계                    | 1,853.60        | 60.00         | 32.15     | 32.15 | 35.00     | 35.00 |    |
| 계          |                       | 123,371.20      | 32.68         | 24.27     | 28.38 | 25.99     | 30.86 |    |

※ 자연녹지지역(공원) 면적(8,319㎡)을 제외한 면적(119,064.8㎡)을 밀도산정 기준면적으로 함

## 3) 밀도계획 (용적률)

| 구분        |                           | 총면적        | 공원 | 산정 면적<br>(㎡) | 조 례<br>용적률<br>(%) | 총 사용 용적률<br>(%) |        | 총 관리용적률<br>(%) |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본교<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br>(자연경관지구) | 112,370.40 | -  | 112,370.40   | 150.00            | 94.93           | 112.93 | 102.00         | 116.35 | -  |

| 구분         |               | 총면적        | 공원    | 산정 면적<br>(㎡) | 조 레<br>용적률<br>(%) | 총 사용 용적률<br>(%) |        | 총 관리용적률<br>(%) |        | 비고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4,237.60   | -     | 4,237.60     | 150.00            |                 | 128.09 |                | 131.20 |    |
|            | 제2종<br>일반주거지역 | 2,456.80   | -     | 2,456.80     | 200.00            | 143.85          | 143.85 | 145.00         | 145.00 |    |
|            | 자연녹지지역        | 8,319.00   | 8,319 | -            | -                 | -               | -      | -              | -      |    |
|            | 소계            | 127,383.8  | 8,319 | 119,064.80   | 151.03            | 95.94           | 114.10 | 102.89         | 117.47 |    |
| 양현관<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2,452.80   | -     | 2,452.80     | 150.00            | 129.57          | 129.57 | 130.00         | 130.00 |    |
|            | 소계            | 2,452.80   | -     | 2,452.80     | 150.00            | 129.57          | 129.57 | 130.00         | 130.00 |    |
| 기숙사<br>캠퍼스 | 제1종<br>일반주거지역 | 1,853.60   | -     | 1,853.60     | 150.00            | 112.56          | 112.56 | 115.00         | 115.00 |    |
|            | 소계            | 1,853.60   | -     | 1,853.60     | 150.00            | 112.56          | 112.56 | 115.00         | 115.00 |    |
| 계          |               | 131,690.20 | 8,319 | 123,371.20   | 151.00            | 99.48           | 114.39 | 103.61         | 117.68 |    |

※ 자연녹지지역(공원) 면적(8,319㎡)을 제외한 면적(119,064.8㎡)을 밀도산정 기준면적으로 함

#### 4)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구분 |   | 구역면적(㎡)  |          | 조례 용적률 |        | 사용 용적률 |        | 이전 용적률  |         | 관리 용적률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비밀 | ① | 31,507.0 | 31,507.0 | 150.00 | 150.00 | 137.41 | 137.41 | -       | -       | 145.00 | 145.00 |                            |
|    | ② | 24,773.5 | 20,577.5 | 150.00 | 150.00 | 169.69 | 188.59 | +35.00  | +40.94  | 185.00 | 190.94 | ⑧구역에서 8,424.00㎡<br>용적 이전받음 |
|    | ③ | 9,466.0  | 9,466.0  | 150.00 | 150.00 | 224.43 | 224.43 | +75.00  | +75.00  | 225.00 | 225.00 | ⑦구역에서 7,100.00㎡<br>용적 이전받음 |
|    | ④ | 2,456.8  | 2,456.8  | 200.00 | 200.00 | 143.85 | 143.85 | -       | -       | 145.00 | 145.00 |                            |
|    | ⑤ | 4,259.0  | 8,455.0  | 150.00 | 150.00 | 96.78  | 257.28 | -       | +110.00 | 97.00  | 260.00 | ⑧구역에서 9,300.50㎡<br>용적 이전받음 |
|    | ⑥ | 6,665.0  | 6,665.0  | 150.00 | 150.00 | -      | 108.40 | -126.39 | -       | 5.00   | 115.00 | 일반관리구역 전환으로<br>용적 이전 취소    |
|    | ⑦ | 7,614.0  | 7,614.0  | 150.00 | 150.00 | -      | -      | -93.25  | -93.25  | 5.00   | 5.00   | ③구역으로 7,100.00㎡<br>용적 이전   |

| 구분          | 구역면적(㎡)   |           | 조례 용적률    |        | 사용 용적률 |        | 이전 용적률 |        | 관리 용적률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⑧           | 32,323.5  | 32,323.5  | 150.00    | 150.00 | -      | -      | -      | -54.83 | -      | -      | ②구역으로 8,424.00㎡<br>⑤구역으로 9,300.50㎡<br>용적 이전 |
|             | 소계        | 119,064.8 | 119,064.8 | 151.03 | 151.03 | 95.94  | 114.10 | -      | -      | 102.89 | 117.47                                      |
| 양재·<br>관    | ①         | 2,452.8   | 2,452.8   | 150.00 | 150.00 | 129.57 | 129.57 | -      | -      | 130.00 | 130.00                                      |
|             | 소계        | 2,452.8   | 2,452.8   | 150.00 | 150.00 | 129.57 | 129.57 | -      | -      | 130.00 | 130.00                                      |
| 기<br>숙<br>사 | ①         | 1,853.6   | 1,853.6   | 150.00 | 150.00 | 112.56 | 112.56 | -      | -      | 115.00 | 115.00                                      |
|             | 소계        | 1,853.6   | 1,853.6   | 150.00 | 150.00 | 112.56 | 112.56 | -      | -      | 115.00 | 115.00                                      |
| 계           | 123,371.2 | 123,371.2 | 151.00    | 151.00 | 99.48  | 114.39 | -      | -      | 103.61 | 117.68 |                                             |

\* 녹지보존구역 내 공원 중복결정 면적(8,319.0㎡) 제외

## 5) 구역별 높이계획

| 구역  |     | 높이(m)                                                       |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①일반 | ①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br>·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br>·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         |    |
| ②일반 | ②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br>· 지표에서부터 12m~20m(5층) 이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br>· 지표에서부터 12m~20m(5층) 이하 |    |
| ③일반 | ③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 ④일반 | ④일반 | · 지표에서부터 16m 이하                                             | · 지표에서부터 16m 이하                                             |    |

| 구역  |     | 높이(m)                                                   |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⑤상징 | ⑤혁신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br>· 지표에서부터 20m(5층) 이하 | · 지표에서부터 52m 이하                  | 혁신성장구역 도입 |
| ⑥외부 | ⑥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일반관리구역 전환 |
| ⑦외부 | ⑦외부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 ⑧녹지 | ⑧녹지 | -                                                       | -                                |           |
| ①일반 | ①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이하                                          | · 지표에서부터 12m이하                   |           |
| ①일반 | ①일반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지표에서부터 12m 이하<br>(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 6) 변경 건축물 조서

| 구분                    | 구역  | 건물명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연면적(㎡) |           | 층수<br>(지하/지상)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본<br>교<br>캠<br>페<br>스 | ⑤혁신 | 교수회관            | 1,202.08 | -        | 4,162.25  | -         | 4,121.75  | -         | 1/5           | -    | 철거               |
|                       |     | 제2경영관<br>→미래혁신관 | 1,461.64 | 3,931.34 | 12,296.22 | 29,974.83 | 3,228.93  | 21,753.19 | 4/3           | 2/11 | 계획변경<br>(혁신성장시설) |
|                       | ⑥일반 | 금잔디관            | -        | 5,271.46 | -         | 15,809.28 | -         | 7,224.64  | -             | 2/2  | 건축계획             |
|                       | 계   |                 | 2,663.72 | 9,202.80 | 16,458.47 | 45,784.11 | 7,350.68  | 28,977.83 |               |      |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

## 7) 혁신성장계획

| 건물명                 | 구역 |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층수                                                                          | 비고                                                                                                                                                                                                      |
|---------------------|----|-----------|--------------------------------------------------------------------------------------------------|--------------------------------------------------------------------------------|---------------------------------------------------------------------------------------------------------------------------------------------------------------------------------------------------------|
| 미래<br>혁신관<br>(금회신축) | ⑤  | 3,931.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29,974.83㎡</li> <li>용적률산정용연면적: 21,753.19㎡</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 22m이하</li> <li>완화: 52m이하</li> </ul> | <혁신성장시설><br>■ 용도구분<br>① 혁신성장용도(8,176.02㎡)<br>- 미래인재육성: 연구공간, 교수실, 강의실, 세미나실<br>- 산학혁신: 교원창업부설연구소, 인재교육원,<br>교육혁신원, RISE센터, 디자인Fab,<br>빅데이터실, 캠퍼스타운사업단<br>② 지역기여용도(4,076.44㎡)<br>- 지상: 갤러리, 강의실(717.17㎡) |



| 건물명         | 구역    |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층수 | 비고                                                                                                                                                                                                                                                                                                                                                                         |    |    |    |        |       |        |             |       |        |
|-------------|-------|--------|-----|-------|----------------------------------------------------------------------------------------------------------------------------------------------------------------------------------------------------------------------------------------------------------------------------------------------------------------------------------------------------------------------------|----|----|----|--------|-------|--------|-------------|-------|--------|
|             |       |        |     |       | <div>- 지하: 강의실, 북하우스, 공유자전거정류장(102.77㎡)<br/>주차장(3,256.50㎡)<br/>&lt;교육연구시설&gt;<br/>- 교육연구시설(12,860.00㎡): 강의실, 연구실<br/>&lt;면적기준&gt;<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적용</th></tr><tr><td>혁신성장기능</td><td>50%이상</td><td>56.32%</td></tr><tr><td>산학혁신-미래인재육성</td><td>30%이상</td><td>37.58%</td></tr></table><div>※ 기준: 지상연면적<br/>(지역기여용도 지하연면적 30%, 지하주차장 100%적용)</div></div> | 구분 | 기준 | 적용 | 혁신성장기능 | 50%이상 | 56.32% | 산학혁신-미래인재육성 | 30%이상 | 37.58% |
| 구분          | 기준    | 적용     |     |       |                                                                                                                                                                                                                                                                                                                                                                            |    |    |    |        |       |        |             |       |        |
| 혁신성장기능      | 50%이상 | 56.32% |     |       |                                                                                                                                                                                                                                                                                                                                                                            |    |    |    |        |       |        |             |       |        |
| 산학혁신-미래인재육성 | 30%이상 | 37.58% |     |       |                                                                                                                                                                                                                                                                                                                                                                            |    |    |    |        |       |        |             |       |        |

※ 완화높이 : 시설의 용도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1.5D사선적용을 완화한 높이

### 3. 입안사유

- 2022년 기결정된 제2경영관 건축계획이 소요예산 등 사업 추진계획 재검토에 따라 첨단학과의 신설, 산학연 협력 등 미래수요에 대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제2경영관 및 교수회관을 통합하여 미래혁신관으로 신축코자 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경계부 1.5D 사선적용 완화를 하고자함
- 또한, 구역계획을 변경(외부활동구역→일반관리구역)하여 부족한 교사시설 확보를 위해 금잔디관을 신축하는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4. 09. 19. ~ 10. 03.
- 계 재 신 문 : 한국경제, 문화일보
- 열 략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 의견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부서<br>(기관)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br>수변감성<br>도시과 | ○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류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br>- 물순환 및 물재이용 관련 계획 요소는 사업의초기(구상)단계에 서부터 반영을 고려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br>-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외 관리용수, 친수용수로 재이용하거나,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수도로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 금회 미래혁신관 신축계획에 따라 친 생태적 우수관리를 위하여 지하2층에 우수조를 계획하여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자 하며, 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등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반영    |

|                   |                                                                                                                                                                                                                                                                             |                                                                                                                                                                                                                                                                                                                                                                                                               |    |
|-------------------|-----------------------------------------------------------------------------------------------------------------------------------------------------------------------------------------------------------------------------------------------------------------------------|---------------------------------------------------------------------------------------------------------------------------------------------------------------------------------------------------------------------------------------------------------------------------------------------------------------------------------------------------------------------------------------------------------------|----|
|                   |                                                                                                                                                                                                                                                                             |                                                                                                                                                                                                                                                                                                                                                                                                               |    |
| 서울시 도시계획<br>상임기획과 | ○ 혁신성장구역 신설 계획(일반관리, 상징경관 → 혁신성장)은 용적률 완화 여부 등과 연계하여 지정 필요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학교는 최근 5년간 재학생 등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였으나 교사시설 확보율은 서울시 대학 중 최저수준으로 캠퍼스 내 신축이 필요함</li> <li>▶ 성균관대학교 본교캠퍼스는 협소한 면적 및 경사지로 인해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캠퍼스내 가용부지는 캠퍼스 면적의 약 12%만 남은 실정임(교수회관 및 후면부지, 급잔디 광장)</li> <li>▶ 이러한 한정된 가용부지로 인해 높이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일한 가용부지인 교수회관 및 후면부지를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높이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용도 및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는 미래혁신관을 신축하고자 함</li> </ul> | 반영 |
|                   | ○ 혁신성장구역 높이계획(12m, 20m → 52m)은 대상지 일대 현황(자연경관지구, 저층주거지 등) 및 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행자 눈높이(Eye level)에서의 경관심의 자료 제시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 기준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높이기준을 토대로 ①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높이기준, ②캠퍼스 현황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높이인 52m로 계획하였으며 추후 자문결과 반영하겠음</li> <li>▶ 혁신성장구역 동측 저층주거지 명륜3길에서 바라본 보행자 눈높이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겠음</li> </ul>                                                                                                                                                                     | 반영 |
| 종로구<br>문화유산과      |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높이 기준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영향 검토 비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굴조사 실시관련<br>- 착공 전,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에 의거 시굴조사(매장유산 유존연적의 10퍼센트 이하범위)를 실시<br>-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후 같은 법 제 14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를 받도록 안내하기 바람(보존준치 전 착공이 불가하며, 원지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 | ▶ 사업 시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될 경우 반영하겠음                                                                                                                                                                                                                                                                                                                                                                                | 반영 |

## 7. 기 타

## ○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비 고    |
|-----|---------|--------|
| 계   | 174,219 | 학교자체예산 |
| 교비  | 174,219 |        |

## ○ 연차별 예산계획 (미래혁신관)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계   | 110,000 | 355   | 2,268 | 14,464 | 31,928 | 42,571 | 18,415 |
| 교비  | 110,000 | 355   | 2,268 | 14,464 | 31,928 | 42,571 | 18,415 |

## ○ 연차별 예산계획 (금잔디관)

(단위:백만원)

| 공종별 | 총사업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비고 |
|-----|--------|-------|--------|--------|--------|--------|----|
| 계   | 64,219 | 598   | 12,805 | 18,606 | 18,606 | 13,606 | -  |
| 교비  | 64,219 | 598   | 12,805 | 18,606 | 18,606 | 13,606 | -  |

- 환경성 검토 결과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진동 등)의 저감 방안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 예정임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대상지는 폭우·폭설·가뭄·강풍 부문이 3,4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추진경위
    - '85. 05. 07. : 도시계획시설(학교)최초결정(건고시 제205호)
    - '01. 08. 16.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서고시 제207호)
    - '19. 02. 14.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시 제61호)
    - '22. 04. 21.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시192호)
    - '24. 09. 06.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
    - '24. 09. 26.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 기 간: '24.09.19.~10.03. (한국경제, 문화일보)

- '24. 10. 07. :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2133-8413)

붙 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3. 혁신성장시설 세부관리기준 주요내용. 끝.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반영 및 계획된 마중물사업 및 지자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현행화하고, 2024. 6월 결정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삼풍상가~PJ호텔구간 공원화 등)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5년~2019년→ (변경) 2015년~2024년
- 나. 예산집행계획 및 완료·운영 종료사업의 사업계획 현행화
- 라. 도시계획 시설폐지(삼풍상가~PJ호텔구간 보행자전용도로)
- 마. (산업재생) 2단계구간 주변 지역산업 고도화 관련  
     · 실제 시행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른 미시행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 현행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허성민 (☎ 02-2133-4928)

##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김포공항 도시재생활성화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남권 신경계거점 조성을 하고자 함.
- 나.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2. 사업개요

-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
- 나. 사업면적: 1,067,713㎡(혁신지구: 354,567㎡, 주변지구: 713,146㎡)
- 다. 사업기간: 2022년~2033년
- 라. 총사업비: 29,804억원(국비 40, 시비 68, 공공 646, 민간 29,050억원)
- 마. 주요 사업내용
  - 미래 신성장 산업거점 구축: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 외 6개
  - 국제·광역교통 거점 조성: 복합환승시설 조성사업
  - 신성장 혁신지원 인프라 확충: 모빌리티 지원센터 조성사업 외 2개
  - 지역 상생방안 마련: 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4개

### 3. 추진경위

- 활성화계획(안) 수립 용역 시행 : ' 22. 3.~' 23. 12.
- 공청회 개최 : ' 24. 10. 11.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 24. 10.
- ※ (향후절차) 공청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의견청취사항

붙임 위치도 및 구상도(안) 각 1부. 끝.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김태현(☎ 2133-8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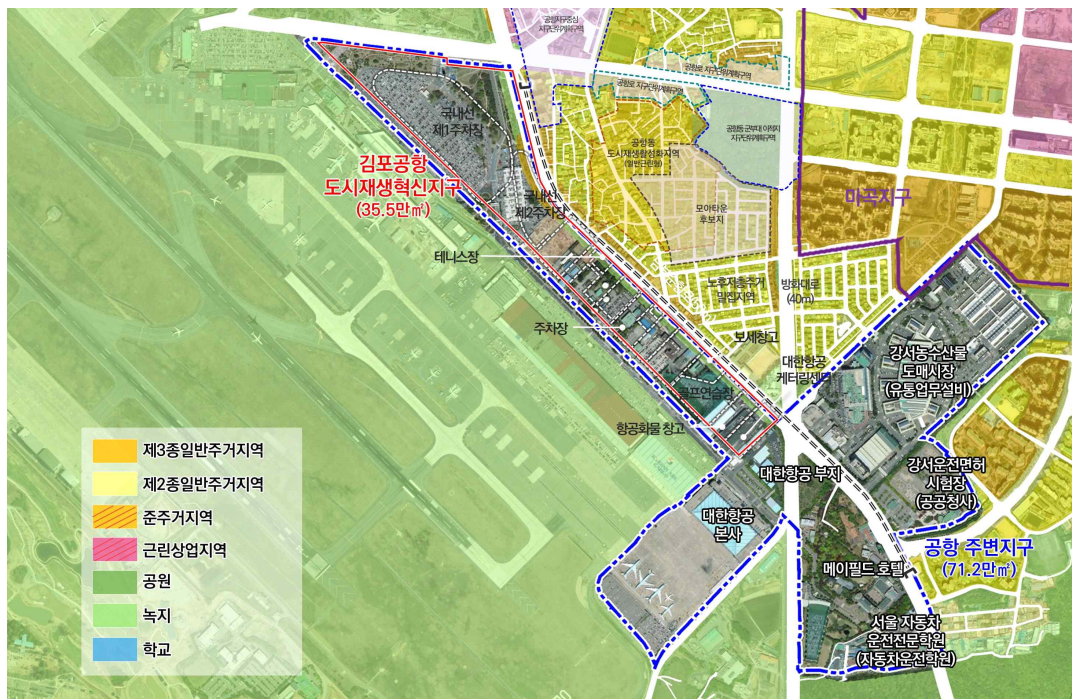


|      |           |
|------|-----------|
| 붙임 1 | 위치도 및 현황도 |
|------|-----------|

□ 위치도



□ 현황분석도



|      |               |
|------|---------------|
| 붙임 2 | 비전 · 목표 및 구상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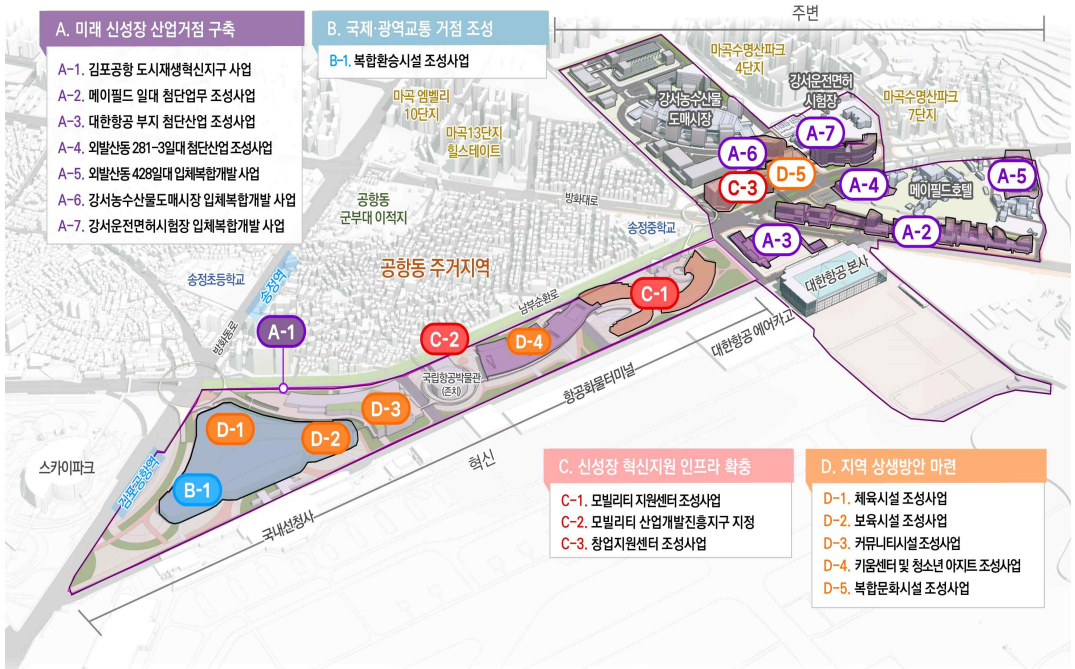
□ 비전 · 목표

**비전**      **도심공항 일대 신성장거점,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목표 및 실행전략**      **"공항복합도시(Airport Complex City)조성"**

|                                                            |                                                        |                                                                   |                                                       |
|------------------------------------------------------------|--------------------------------------------------------|-------------------------------------------------------------------|-------------------------------------------------------|
| <b>미래 신성장 산업 거점 구축</b><br>• 신산업 혁신허브 육성 및 일자리 중심 도시공간기능 개편 | <b>국제·광역교통 거점 조성</b><br>• 비즈니스 도심공항 기능제고를 위한 광역교통허브 조성 | <b>신성장 혁신지원 인프라 확충</b><br>•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교류·인력 및 기술지원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 | <b>지역 상생방안 마련</b><br>• 지역 필요 생활SOC시설 확충 및 소음피해지역 대책마련 |
|------------------------------------------------------------|--------------------------------------------------------|-------------------------------------------------------------------|-------------------------------------------------------|

□ 종합구상도(안)







|       |  |
|-------|--|
| 기관의 장 |  |
| 선     |  |
| 람     |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  |  |  |  |  |  |  |  |  |